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71호
2008년 12월 15일 월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50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변경 고시 3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52호 현수막지정계시대(상단부분)
위탁관리 · 운영업체선정 고시 5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53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설치(변경)인가 고시 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80호 일반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공개모집 공고 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142호 공시송달공고 1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148호 보상계획공고 21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153호 어촌체험마을 민간위탁(단체 또는 주민
대표)선정공고(안) 77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1154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8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162호 공시송달공고	15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163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16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167호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170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공고 제2008-21호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	171
○ 범우연립재건축조합고시 제2008-01호 범우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	173

고	시
---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50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변경 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하고 동
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정비사업 종류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사업 명칭 : 신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 위치(면적) : 인천 서구 신현동 254, 264-5, 273-9, 273-10번지
(163,872.7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법인명칭 : 신현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나. 사무소 소재지 : 인천 서구 심곡동298번지 공성빌딩 7층 701호
 - 다. 대표자 : 조합장 주옥삼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06.09. ~ 2009.09.
6. 사업시행인가일 : 2005.03.29.
7. 재건축사업 주택건설계획
 - 가. 대지면적 : 163,872.70㎡
 - 나. 건 폐 율 : 14.95%
 - 다. 용 적 률 : 256.92%
 - 라. 사업규모 : 지하2층 / 지상16 ~ 33층 / 36개동 / 3,331세대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주체		신현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주옥삼)	좌 동
위 치		서구 신현동 254번지외 3필지 (264-5, 273-9, 273-10)	좌 동
규 모		지하2층 / 지상22 ~ 33층 36개동 3,331세대	지하2층 / 지상16 ~ 33층 36개동 3,331세대
사 업 규 모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좌 동
	대지면적	163,872.70㎡	좌 동
	건축면적	24,257.16㎡	24,497.92㎡
	연 면 적	565,352.612㎡	565,393.811㎡
	건 폐 율	14.80%	14.95%
	용 적 율	256.93%	256.92%
	주차대수	4,559대	4,550대
	조경면적	60,878.30㎡	60,954.92㎡
전 체 면 적	83.610㎡	699세대	좌 동
	84.431㎡ (A)		
	109.279㎡	1,346세대	좌 동
	109.632㎡ (A)		
	109.953㎡ (B)		
	109.279㎡ (C)		
	134.418㎡	178세대	좌 동
	144.702㎡	598세대	좌 동
	186.012㎡	302세대	좌 동
	206.281㎡	208세대	좌 동
	계	3,331세대	좌 동
	단위세대 기본형 및 발코니 확장형 변경		
주 거 복 리 시 설	어린이놀이터	3,852.20㎡	3,873.470㎡
	노 인 정	427.70㎡	420.608㎡
	주민공동시설	1,649.00㎡	1,641.453㎡
	주민운동시설	2,597.70㎡	2,601.760㎡
사업기간		2006.09 ~ 2009.06	2006.09 ~ 2009.09
사 업 비		538,589,000,000원	좌 동
특기사항		관계법령 및 인가 조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52호

현수막지정게시대(상단부분) 위탁관리 · 운영 업체선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서구내 현수막지정게시대(상단부분) 위탁관리 · 운영 업체
 - 수탁자 :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시지부
 - 대표자 : 지순철
 - 영업장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16-4
 - 위탁기간 : 2008. 12. 3 ~ 2015. 5. 22

2008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53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설치(변경)인가 고시

인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 서구 경서동 248-2번지 일원 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하수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설치(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8년 1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48-2번지 일원
2.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배수처리 및 주변 자연수의 원활한 처리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경서지구 지구외 배수시설
 - 【명칭】 경서지구 지구외 “A” , “B”라인 배수시설
4.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면적】 · A-Line : 1,485㎡ · B-Line : 4,516㎡
 - 【규모】 · A-Line : 하수관거(1.5X1.0 ~ 2.5x1.5x2련), L=384m
 - B-Line : 하수관거(2.0X1.5 ~ 3.5x1.5), L=627m
 - 하수공(Φ450mm ~ Φ600mm), L=628m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변경없음) : 공촌처리구역
6. 사업 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7.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2004. 7 ~ 2008. 12. 31 【변경】 2004. 7 ~ 2009. 12. 31

※ 변경사유 : 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변경없음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080호

**일반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일반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를
선정코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1. 사업내용**

- 사 업 명 : 음식물류폐기물 일반주택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 대행기간 : 2009.01.01 ~ 2009.12.31
- 업무범위 : 관내 일반주택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
- 대행처리비
 - 부착세대 : 2,706원 X 부착세대 이하
 - 미부착세대 : 1,776원 X 미부착세대 X 0.8 이하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08. 12. 10(수) ~ 2008. 12. 16(화)

(5일간 봉인 후 제출)

3.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인천광역시 서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오수팀(☎032-560-4424)

4. 접수방법 : 인편(공무원 근무시간 내 접수하며 우편 등 기타방법 불가)

- ※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선정
취소

5. 응모자격

- 법규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동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

활용을 하는 자 또는 동법 제46조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단,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일반사항

-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사업소)의 소재지가 인천, 경기, 충청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능력이 35톤/일 이상인 업체
- 수집운반처리시 PDA를 이용한 전산DB 및 바코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계약일 까지 두어야 함)

6. 선정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1개 업체 선정
- 심사 및 선정
 - 1차 : 제출된 서류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응모자격에 미달되는 부적격 업체(서류미필자 포함)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2차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업체 선정(개별 통보)
- 선순위자 계약 불응시 후순위자로 선정

7.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평면배치도와 처리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제품(사료·퇴비 등)의 사용 및 공급계획서
 - 처리실적 : 최근 2년간 처리실적(증빙서류 첨부)
 - 재정상태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등
 - 수집·운반거리 및 시간 명기(인천 서구청~처리업체)
 - 폐수 및 협잡물 처리 계획
(향후 5년 이내 음폐수 육상처리 대책 방안 포함)
 - 처리시설 고장 등 비상시 처리 계획(보증처리업체 관련 자료 포함)
 - 임직원 및 직원 현황(피고용자 의료보험가입 증명원 첨부)
 - 업체 행정처분사항

- 악취 및 방역대책
- 타 자치단체(감량 의무사업장 포함)와의 계약관계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 건축물등록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검사결과서 등(해당서류만 제출)
- 보증업체 관련자료
- PDA 이용 전산DB 및 바코드시스템 처리자 채용계획(현재 자격증소지자 재직 시 경력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 기타 응모 관련 증빙자료 등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참여신청서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현황	면적	소유형태	직원
	m ²	☐ 자가 ☐ 임대	명
일반 현황	처리시설 능력	톤/일	
	수집 · 운반거리 (인천 서구청~처리업체)	km	
	처리비 (처리단가)	부착세대 : 미부착세대 :	원 원
기타 제출서류			

2008. 12. .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귀하

2009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일반주택 수집·운반·처리 대행 계약(협약)서

제1조(목적)

- ① 본 계약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일반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갑” 이라 칭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주)○○○○(대표 : ○○○)를 “을” 이라 칭한다.

제2조(청소구역)

“을” 은 “갑” 이 지정하는 청소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작업(이하 “청소” 라 한다)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다음연도 대행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을” 은 다음연도 대행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본 계약을 연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대행업무를 중단할 수 없으며, “을” 은 주민생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갑” 의 조치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③ “을” 의 허가관련 사항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상실할 경우에는 “갑” 이 계약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④ “을” 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다음연도 대행업체에게 일반주택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을” 은 본 계약 체결시 청소차량의 지역별 통과시간, 장비, 인력, 수집·운반방법, 처리 등 청소작업수행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방법 및 휴일)

- ① “을”은 제2조의 청소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하여 분리배출된 것을 상차 등 수집·운반함에 있어 지정장소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을”은 수집한 음식물류폐기물을 “갑”의 지시에 따라 운반차량 및 운반노선을 준수하여 최종 처리장인 “을”의 처리장까지 매일 사업계획서상의 지정된 시간에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③ 청소사업 휴일은 2일 이상 연속하여 휴일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갑”이 요구할 경우 “을”은 청소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갑”이 추석 등 연휴기간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전용수거용기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종사원의 관리 및 주의태만으로 인한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변상 등)을 부담한다.
- ⑥ 음식물류폐기물을 “갑”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대기,수질), 해양오염방지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재산상의 보상 문제 등은 “을”에게 귀속한다.

제6조(작업장비의 규격 및 수량)

- ①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규격 및 수량의 확보는 계약 기간 중 수시로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청소구역의 확장, 처리인구의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비 등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은 책임지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실 등 소재지)

“을”은 청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전화 및 집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차고 및 정비시설을 설치하여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인력관리)

- ① “갑”은 “을”의 종사인력(이하 “청소인력”이라 한다)을 지도, 감독 및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갑”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또는 민원발생시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락하여야 한다.

② “을”의 청소인력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청소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금품수수·불친절 등 민원 발생시 즉시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제반업무를 불이행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0조(수수료 지급 등)

① 수집·운반·처리 대행 수수료의 지급내역은 부칙에 의한다.

② 수집·운반·처리 대행 수수료의 지급일은 전월분 수수료를 매월 20일까지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부칙에 의한다.

제11조(부담)

“을”은 “을”소속 청소인력의 임금과 퇴직금 및 사업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각종비용과 재해보상 등 일체의 부담금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사고책임)

① “을”은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즉시 그 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의 종사인력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을”이 책임을 진다.

③ 제①,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을”은 “갑”이 부담하는 전액을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금지)

- ① “을”은 수집·운반·처리 대행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
- ② 본 수집·운반·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향후 어떠한 기득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벌칙)

“갑”은 “을”의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과징금 및 행정처분 외에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익월 대행료 지급 시 감액한 후 지급한다. 또한, 각 위반행위별로 추가적발시마다 배수의 금액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1. 수거관리 전산프로그램의 임의 조작 등의 부당한 행위로 대행수수료를 증가시키기 위한 부당행위 적발 시에는 적발된 금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을”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소홀 및 기타 대행계약에 대한 현저한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3회 이상의 경고 처분(동일지역에서 동일민원이 월 3회 이상 반복 발생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전월 대행료 지급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제15조(연대보증업체 선정 및 의무)

- ① “을”은 비상사태 발생시를 대비하여 대행 업무를 대신 수행할 연대보증업체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연대보증업체는 대행 업무 처리 시 본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에게 위탁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3일 이상 수집·운반·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연대보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업체에서 수집·운반·처리토록 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업체에서 수집·운반·처리 시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규정된 구역 내의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전산화DB구축에 따른 PDA를 이용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스티커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법규는 물론 “갑”의 사업방침 및 지

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매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실적을 정확하게 작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집·운반한 음식물류폐기물은 구에서 지정한 장소와 “을”의 처리장 외에는 이를 반입 또는 투기하지 못한다.
5. 종사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6. 장비의 청결유지 및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시 침출수 및 비산방지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각 지역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시간을 정하여 수거하되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8. “을”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법상의 권익 등 문제는 전적으로 “을”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9.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민 봉사 작업 등 제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종사원에게 필요한 샤워장, 휴게실 등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0. “을”은 적환장 및 처리장의 악취 및 방역대책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 ① “갑”은 관련법규 및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을”을 지도·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갑”은 청소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실적 등의 제출)

“갑”이 청소업무 전반에 대하여 “을”에게 아래사항을 요구할 경우 “을”은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월별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실적
- ② 청소인력의 고용 및 근무상황(사고발생 등)
- ③ 청소장비의 운영실적, 교육실적, 탈취제 살포 실적
- ④ 기타 “갑”이 청소업무에 필요한 자료 등

제19조(청소업무의 대집행)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의한 제반업무를 3일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갑”이 이를 일방적으로 집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요된 비용은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부담한다.

제20조(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일방적인 서면 통지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물의를 제기하였거나 청소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2. 관계법령 및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3. “갑”의 적정한 장비확보요구, 정당한 지시, 감독과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4. 위탁처리 운영상 현저한 실책이 있다고 “갑”이 인정할 때
5. “갑”의 시책결정에 따라 “을”에게 위탁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을”이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갑”이 평가 하였을 때
7. 음식물 수거적체로 1일 10회 이상 민원접수가 3일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8. 수거적체 민원발생으로 “갑”이 “을”에게 수거운반 민원 해소토록 월 3회이상 촉구 공문 발송할 경우

② “을”은 “갑”의 일방적으로 해지에 따른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90일전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사유를 “갑”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대행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갑”의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청소작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해지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의 지급은 구에서 청소작업을 수행하라고 지시한 기간동안 처리한 양만큼 지급한다.

제21조(단가조정)

“갑”은 물가상승 등 제반 여건변화로 인하여 단가인상 요인이 발생될 경우
음식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상의 용어해설)

이 계약에 규정이 없거나 “갑”과 “을”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갑”
의 결정에 따른다.

제23조(관할법원)

“갑”과 “을”이 민사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관할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계약은 2009.01.01.부터 적용한다.

제2조(도급수수료)

- 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을”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월 5일까지 전월분 도급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한다.
- ② 2009년도 도급수수료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부착한 가구로서 1가구당 월 ()원으로 지급한다.
- ③ 2009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미부착가구에 대하여는 주민부담금 930원을 제외한 ()원을 수거지역 미부착가구에서 20%를 제한 세대수만큼 지급한다. 【()원 × 납부필증 미부착가구수 × 0.8】
- ④ 도급수수료의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계약부서와의 계약한날부터 변경된 수수료로 지급한다 .
- ⑤ “을”은 “갑”이 지정한 수거지역 내에서 미부착 가구에 대한 현황(주소, 호수 등)을 매월 파악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부착 세대가 감소되도록 홍보 등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2008년 월 일

“갑”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을” (주)○○○○ ○○○ (인)

인천광역시서구 제2008-11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또는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8. 12. 10 ~ 2008. 12. 26 (15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2. 당사자	성 명 (차량번호)	이 봉 규 (인천35마9667)			
	주 소	인천시 서구 가정동 284-375 개나리아파트 13동 504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사용 및 봉인탈락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4872, FAX 560-4869)		
		기 한	2008년 12월 26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yut2000@korea.kr)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148호

보 상 계 획 공 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공촌지구 소3-1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공사기간	사 업 시 행 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공촌지구 소3-1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	2008. 12. ~ 2009. 3.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산38-1번지 일원	L= 424m B= 6m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 예산의범위내에서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보상금산정방법 : 2개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기간 : 2008. 12. 11. ~ 2008. 12. 25 (15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560-4763)

4. 편입물건조서

- 토 지

위 치	지 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4, 18-1, 18-2, 18-3, 18-4, 18-5, 18-6, 40-10, 40-12, 40-14, 40-16, 40-17, 40-18, 40-20, 40-22, 40-23, 40-24, 40-25, 40-26, 40-27, 47, 47-16, 47-17, 47-18, 47-19, 47-3, 산26-5, 산26-6, 산27-1, 산 27-4, 산29-11, 산29-12, 산29-13, 산29-14, 산29-15, 산29-7, 산29-8, 산30-19, 산30-20, 산30-21, 산30-6, 산30-9, 산38-6, 산38-7, 산 38-8, 산38-9, 산42-1, 산42-4, 산42-5, 산43-2

○ 지장물 : 위토지상의 대상 지장물 등

지 장 물 조 서 (총괄표)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번호	소재지		부호	용도	구조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취득일자	성명	주소	관리의종류	
1	공촌동	산 29-14임	1	채신주	H=6.00M	1EA							
2	"	산29-14임	2	한진주	H=14.00M	1EA							
3	"	47-18도	3	채신주	H=6.00M	1EA							
4	"	산29-14임	4	개나리	H=1.80M	10.90M²	국	산림청					
4	"	47-18도	4	개나리	H=1.80M	6.00M²	윤대석외1인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47-9					
5	"	산38-8임	5	개나리	H=1.80M	2.50M²	국	재무부					
6	"	산38-8임	6	채신주	H=6.00M	1EA							
6	"	산38-8임	6	한진주	H=14.00M	1EA							
7	"	40-11임	7	개나리	H=1.60M	13.40M²	이정순외1인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7	"	40-24임	7	개나리	H=1.60M	1.90M²	이정순외1인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8	"	산38-8임	7	개나리	H=1.60M	2.00M²	국	재무부					
8	"	40-11임	8	채신주	H=6.00M	1EA							
9	"	40-9목	9	채신주	H=6.00M	1EA							
10	"	40-9목	10	한진주	H=14.00M	1EA							
11	"	18-1전	11	채신주	H=6.00M	1EA							
12	"	40-16도	12	소화전면홀	D=800mm	1EA							
13	"	18-1전	13	은행나무	나무	2그루	정연섭외2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16					
14	"	18-1전	14	개나리	H=1.20M	9.80M²	정연섭외2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16					
14	"	18-3전	14	개나리	H=1.20M	2.80M²	정연섭외2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16					
15	"	40-4목	15	사철나무	나무	1그루	김용기	심곡동 연희3지구 51블럭 1-9롯					
16	"	18-3전	16	개나리	H=1.40M	9.30M²	정연섭외2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16					
17	"	18-1전	17	채신주	H=6.00M	1EA							

지 장 물 조 서 (총괄표)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번호	소재지		부호	용도	구조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취득일자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8	공촌동	신43-2인	18	창고	콘크리트	1.50M ²	국	산림청					
	"	11-4전	18	창고	콘크리트	3.80M ²	정용섭외1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16					
	"	11-23전	18	창고	콘크리트	3.60M ²	정용섭외1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16					
	"	11-24전	18	창고	콘크리트	2.10M ²	양경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0					
	"	11-26전	18	창고	콘크리트	10.90M ²	양경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0					
19	"	11-26전	19	한전주	H=14.00M	1EA							
20	"	11-25대	20	담장	H=1.8M	L=24.00M	양경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0					
21	"	11-23전	21	한전주	H=14.0M	1EA	정용섭외1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16					
22	"	11-2대	22	채신주	H=6.00	1EA							
23	"	11-21대	23	담장	H=1.8M	L=15.00M	양경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0					
24	"	11-21대	24	문주	0.4x0.6	2EA	양경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0					
25	"	11-3대	25	가추	9.0x4.20	29.60M ²							
	"	11-22대	25	가추	9.0x4.20	6.50M ²	국	재무부					
26	"	11-6대	26	창고	시멘트블럭	165.10M ²							
	"	11-7대	26	창고	시멘트블럭	10.80M ²							
	"	11-25대	26	창고	시멘트블럭	13.50M ²	양경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0					
27	"	11-26전	27	비닐하우스	비닐,철파이프	19.25M ²	양경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0					
28	"	11-26전	28	채신주	H=6.00M	1EA							
29	"	신42-4인	29	한전주	H=14.00M	1EA							
30	"	신42-4인	30	채신주	H=6.00	1EA							
31	"	18-3전	31	한전주	H=14.00M	1EA							
32	"	18-3전	32	젓나루	나무	8그루	정용섭외2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16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개발제한구역 공촌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국						
	주 소		산림청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산29-14임	체신주	H=6.00M	1EA					
		한천주	H=14.00M	1EA					
		개나리	H=1.80M	10.90M²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국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윤대석 외 1인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47-9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47-18도	체신주	H=6.00M	2EA				
		개나리	H=1.80M	6.00M ²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윤대석 외 1인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국					
	주 소		재무부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산38-8임	개나리	H=1.80M	2.50M²				
		채신주	H=6.00M	1EA				
		한전주	H=14.00M	1EA				
		개나리	H=1.60M	2.00M²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국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개발제한구역 공촌 소3-1 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이정순 외 1인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 촌 동	40-11임	개나리	H=1.60M	13.40M ²				
		체신주	H=6.00M	1EA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이정순 외 1인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이정순 외 1인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40-24임	개나리	H=1.60M	1.90M ²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이정순 외 1인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이정순 외 1인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40-9목	채신주	H=6.00M	1EA					
		한전주	H=14.00M	1EA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이정순 외 1인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개발제한구역 공촌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정연섭 외 2인					
	주 소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16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18-1전	채신주	H=6.00M	1EA				
		개나리	H=1.20M	9.80M²				
		은행나무	나무	2그루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정연섭 외 2인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정연섭						
	주 소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16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18-3전	개나리	H=1.20M	9.80M²					
		개나리	H=1.40M	9.30M²					
		한천주	H=14.00M	1EA					
		잣나무	나무	8그루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정연섭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김지용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39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40-16도	소화전맨홀	D=800mm	1EA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김지용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개발제한구역 공촌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김용기						
	주 소		심곡동 연희3지구 51블럭 1-9롯데 동남아파트 1동 306호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40-4목	사철나무	나무	1그루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김용기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국						
	주 소		산림청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산43-2임	참고	콘크리트	1.50M²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국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정용섭 외 1인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0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11-4전	창고	콘크리트	1.50M²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정용섭 외 1인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개발제한구역 공촌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정용섭 외 1인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0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11-23전	참고	콘크리트	3.60M²				
		한전주	H=14.0M	1EA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정용섭 외 1인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양경준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0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11-24전	창고	콘크리트	2.10M²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소유자 양경준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양경준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0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11-26전	창고	콘크리트	10.90M²				
		한전주	H=14.00M	1EA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양경준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개발제한구역 공촌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인점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국					
	주 소		산림청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영 권 면	산42-4임	한전주	H=14.00M	1EA				
		제신주	H=6.00	1EA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국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정주영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39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40-15목	영두나무	나무	1그루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정주영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정주영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39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40-7목	수도계량기	계량기	1EA				
		개나리	H=1.7M	6.20M ²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정주영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개발제한구역 공촌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정주영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39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40-25목	채신주	H=6.00M	1EA					
		웬스	H=1.6M	L=46.00M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정주영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김지용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39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40-21도	수도계량기	계량기	1EA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김지용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이정순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40-23목	개나리	H=1.7M	21.30M²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이정순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개발제한구역 공촌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이정순 외 1인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40-12임	항나무	나무	1그루					
		한진주	H=14.00M	1EA					
		개나리	H=1.7M	3.90M²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이정순 외 1인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이정순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40-26도	개나리	H=1.7M	3.90M²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이정순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국						
	주 소		재무부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산38-1임	한전주	H=10.00M	1EA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국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개발제한구역 공촌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김지용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39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 촌 동	40-16도	항나무	나무	5그루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소유자 김지용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국						
	주 소		산림청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산29-3외	블럭담장	H=1.6M	L=22.00M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국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양경준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6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11-25대	담장	H=1.8M	L=24.00M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양경준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양경준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0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11-21대	담장	H=1.8M	L=15.00M				
		문주	0.4x0.6	2EA				
		체신주	H=6.00	1EA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양경준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주 소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11-3대	가주	9.0x4.20	29.60M²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개발제한구역 공촌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국						
	주 소		재무부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11-22대	가차	9.0x4.20	6.50M ²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국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주 소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11-6대	창고	시멘트블럭	165.10M²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촌지구 소 3-1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주 소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11-7대	창고	시멘트블럭	10.80M²				
		비닐하우스	비닐,철파이프	19.25M²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개발제한구역 공촌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명칭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 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명칭		양경준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6						
물 건 의 내 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촌동	11-25대	창고	시멘트블럭	13.50M²					
		기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8년 11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물건의소유자 양경준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용 지 조 서

개발제한구역 공촌지구 소3-1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			잔여 면적 (㎡)	소유자		비고	관계인	
	동	지번			계	도로내 (법면부)	도로외 (법면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공촌동	신30-19	구	172	87	87		85	국	신림정			
2	공촌동	신30-21	구	13	13	13		-	국	신림정			
3	공촌동	신30-20	임	5	5	5		-	국	신림정			
4	공촌동	신29-8	구	5	5	5		-	국	농림부			
5	공촌동	신29-12	구	11	11	11		-	국	농림부			
6	공촌동	신29-15	임	7	7	7		-	국	신림정			
7	공촌동	신29-14	임	309	309	309		-	국	신림정			
8	공촌동	신29-13	임	3	3	3		-	국	신림정			
9	공촌동	47-17	전	9	9	9		-	국	재경경제원			
10	공촌동	47-18	도	59	59	59		-	윤대석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47-9	1/2	홍소기 영은 (주안공단지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11	공촌동	47-19	임	29	29	29		-	유순자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47-9	1/2	홍소기 영은 (주안공단지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12	공촌동	47-16	임	18	18	18		-	윤대석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47-9	1/2	홍소기 영은 (주안공단지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유순자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47-9	1/2		

용 지 조 서

개발제한구역 공촌지구 소3-1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			잔여 면적 (㎡)		소유자		비고	관계인	
	동	지번			계	도로내 (원면부)	도로외 (원면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3	공촌동	산38-8	임	232	232	232		-		국	재무부			
14	공촌동	산38-9	임	31	31	31		-		국	재무부			
15	공촌동	40-12	임	133	133	133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1103.8/1203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90-22 임충필라비동 306호	99.2/1203		
16	공촌동	40-14	도	27	27	27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17	공촌동	40-20	도	6	6	6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18	공촌동	40-26	도	201	201	201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19	공촌동	40-23	목	21	21	21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20	공촌동	40-18	도	11	11	11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21	공촌동	40-22	대	71	71	71		-		김지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39			
22	공촌동	40-16	도	133	133	133		-		김지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39			
23	공촌동	40-25	목	118	118	118		-		정주영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39			
24	공촌동	40-27	목	17	17	17		-		정주영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39			
25	공촌동	18-3	전	204	204	204		-		정연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16	1322.5/3643		
										정현섭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0	667.5/3643		

용 지 조 서

개발제한구역 공촌지구 소3-1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

입원 번호	소재지		공부 면적 (㎡)	편입면적 (㎡)			잔여 면적 (㎡)	소유자		비고	관계인	
	등	지번		계	도로내	도로외 (범면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정복섭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1-2	1653/3643		
26	공촌동	18-5	전	130	130		-	장경애	서울 강동구 고덕동 486 아남아파트 5동 803호		서인천농협 (연희지점)	인천 서구 기창동 482-4
27	공촌동	산42-4	임	308	308		-	국	산림청			
28	공촌동	산26-5	임	76	76		-	국	산림청			
29	공촌동	산26-6	임	7	7		-	국	산림청			
30	공촌동	11-24	전	69	69		-	양경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0		남동농업협동조합 (석암,신간석지점)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31	공촌동	11-26	전	70	70		-	양경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0		남동농업협동조합 (석암,신간석지점)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32	공촌동	11-23	전	101	101		-	정용섭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0	1652.9/2360	서인천농협 (연희,서곶지점)	인천 서구 기창동 482-4
								정현섭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388-1 이삭민트레아파트 105-902	707.1/2360		
33	공촌동	11-25	대	93	93		-	양경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6		남동농업협동조합 (석암,신간석지점)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34	공촌동	11-22	대	44	44		-	국	재무부			
35	공촌동	11-21	대	60	60		-	양경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0		남동농업협동조합 (석암,신간석지점)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36	공촌동	11-20	전	1	1		-	양경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0		남동농업협동조합 (석암,신간석지점), 인천시농협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1, 인천 중구 해안동 27가 5
37	공촌동	산38-7	임	145	145	2	-	국	재무부			

용 지 조 서

개발제한구역 공촌지구 소3-1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			전 여 면적 (㎡)		소 유 자		비 고	관 계 인	
	동	지 번			계	도로내	도로외 (별면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38	공촌동	40-24	임	150	150	34	116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1103.8/1203		
39	공촌동	산29-11	임	23	23		23	-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개산동 990-22 임창빌라 비동 306호	99.2/1203		
40	공촌동	산38-6	임	677	31		31	646		국	신림청			
41	공촌동	산29-7	임	1,326	2		2	1,324		국	재무부			
42	공촌동	산27-4	임	768	20		20	748		소용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올더데일 코트 3			
43	공촌동	산27-1	임	9,918	52		52	9,866		이희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206-3			
44	공촌동	40-10	도	5	5		5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45	공촌동	40-17	도	7	7		7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46	공촌동	18-6	전	3	3		3	-		정경애	서울 강동구 고덕동 486 아남아파트 5동 803호		서인천농협 (연희지점)	인천 서구 가정동 482-4
47	공촌동	산42-1	임	1,297	45		45	1,252		국	신림청			
48	공촌동	산43-2	임	1,091	22		22	1,069		국	신림청			
49	공촌동	18-2	전	3,503	79		79	3,424		정경애	서울 강동구 고덕동 486 아남아파트 5동 803호		서인천농협 (연희지점)	인천 서구 가정동 482-4
50	공촌동	산42-5	임	279	49		49	230		국	신림청			
51	공촌동	18-4	전	51	21		21	30		정연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16	1322.5/3643		

용 지 조 서

개발제한구역 공촌지구 소3-1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			잔여 면적 (㎡)		소 유 자		비 고	관 계 인	
	동	지 번			계	도로내 (범면부)	도로외 (범면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정현섭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0	667.5/3643		
										정복섭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1-2	1653/3643		
52	공촌동	18-1	전	3,388	124	124		3,264		정연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16	1322.5/3643		
										정현섭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0	667.5/3643		
										정복섭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1-2	1653/3643		
53	공촌동	47-3	전	13,673	163		163	13,510		학교법인대인학원	인천 서구 공촌동 47-3			
54	공촌동	47	전	1,894	25		25	1,869		학교법인대인학원	인천 서구 공촌동 47-3			
55	공촌동	산30-6	임	199	3		3	196		국	산림청			
56	공촌동	산30-9	임	311	155		155	156		국	재정경제부			
57	공촌동	11-4	전	2,259	83		83	2,176		정용섭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0	1652.9/2360	서인천농협 (연회, 서곶지점)	인천 서구 가정동 482-4
										정현섭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388-1 이삭민들레아파트 105-902	707.1/2360		

용 지 조 서(소유자별)

개발제한구역 공촌지구 소3-1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공 복 면 적 (㎡)	편입면적 (㎡)			잔여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	지 번			계	도로내	도로외 (원면)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가	산림청													
1	공촌동	산30-19	구	172	87	87		86	국	산림청				
2	공촌동	산30-21	구	13	13	13		-	국	산림청				
3	공촌동	산30-20	임	5	5	5		-	국	산림청				
6	공촌동	산29-15	임	7	7	7		-	국	산림청				
7	공촌동	산29-14	임	309	309	309		-	국	산림청				
8	공촌동	산29-13	임	3	3	3		-	국	산림청				
27	공촌동	산42-4	임	308	308	308		-	국	산림청				
28	공촌동	산26-5	임	76	76	76		-	국	산림청				
29	공촌동	산26-6	임	7	7	7		-	국	산림청				
39	공촌동	산29-11	임	23	23		23	-	국	산림청				
47	공촌동	산42-1	임	1,297	45		45	1,252	국	산림청				
48	공촌동	산43-2	임	1,091	22		22	1,069	국	산림청				
50	공촌동	산42-5	임	279	49		49	230	국	산림청				
55	공촌동	산30-6	임	199	3		3	196	국	산림청				
				3,789	957	815	142	2,832						
나	농림부													
4	공촌동	산29-8	구	5	5	5		-	국	농림부				
5	공촌동	산29-12	구	11	11	11		-	국	농림부				
				16	16	16	-	-						

[illegible]

영역 지 조 서(소유자별)

[illegible]

영역 지적서(소유자별)

[illegible]

영지조서(소유자별)

[illegible]

용 지 조 서(소유자별)

개발제한구역 공종지구 소3-1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

입원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권면면적(㎡)			잔여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계	도로내	도로외 (법면)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차	이정순													
16	공촌동	40-14	도	27	27	27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17	공촌동	40-20	도	6	6	6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18	공촌동	40-26	도	201	201	201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19	공촌동	40-23	목	21	21	21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20	공촌동	40-18	도	11	11	11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44	공촌동	40-10	도	5	5	5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45	공촌동	40-17	도	7	7	7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278	278	268	12	-						
카	이정순, 이태순													
15	공촌동	40-12	임	133	133	133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1103.8/1203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90-22 임창필라비동 306호	99.2/1203			
38	공촌동	40-24	임	150	150	34	116	-	이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1	1103.8/1203			
				283	283	167	116	-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90-22 임창필라비동 306호	99.2/1203			

공 지 조 서(소유자별)

개발제한구역 공촌지구 소3-1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

필지 번호	소재지		지목	공 부 면 적 (㎡)	권면적 (㎡)			잔여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계	도로내 (법면)	도로외 (법면)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하 정현섭, 정현섭, 정복섭															
25	공촌동	18-3	전	204	204	204		-	정현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16	1322.5/3643				
									정현섭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0	667.5/3643				
									정복섭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1-2	1653/3643				
51	공촌동	18-4	전	51	21	21		30	정현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16	1322.5/3643				
									정현섭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0	667.5/3643				
									정복섭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1-2	1653/3643				
52	공촌동	18-1	전	3,388	124	124		3,264	정현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116	1322.5/3643				
								-	정현섭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0	667.5/3643				
									정복섭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1-2	1653/3643				
거 정용섭, 정현섭															
32	공촌동	11-23	전	101	101	101		-	정용섭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0	1652.9/2360	서인천농협 (연합, 서광지점)	인천 서구 가평동 482-4		
									정현섭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388-1 이삭민통해안리105-902	707.1/2360				
57	공촌동	11-4	전	2,259	83		83	2,176	정용섭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0	1652.9/2360	서인천농협 (연합, 서광지점)	인천 서구 가평동 482-4		

영역 지 조 서(소유자별)

[illegible]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153호

어촌체험마을 민간위탁 (단체 또는 주민대표) 선정 공고(안)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세어도어촌체험마을운영관리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서구 원창동 세어도에 조성된 어촌체험마을 시설을 위탁 운영할 민간단체 또는 주민 대표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어촌체험마을 민간위탁단체(주민대표) 선정 개요

- 위탁시설물대상 : 마을종합안내소, 휴게쉼터 및 바비큐장, 밭농사 체험장, 갯벌체험장 진입로 및 데크, 안내판 등
- 수탁자의 의무
 - 어촌체험마을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시설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보조금 등은 어촌체험마을 운영 및 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 어촌체험마을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수탁기간 연장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위탁기간 : 3년간 (2009. 1. 1 ~ 2011. 12. 31)

3. 민간위탁단체 계약방법 :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선정후 협약 체결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8. 12. 12(금) ~ 12. 16(화) 17:00까지 접수
- 신청방법 : 서구청 별관 3층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560-4456)
- 구비서류
 - 민간위탁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대표자 이력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어촌계 현황 1부.
 - 위탁 관리 운영 협약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에 시설 운영계획 및 각 시설의 전담인력을 상세히 기재 할 것.

- 각 시설 전담인원의 시설전담 동의서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5.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및 각 시설 전담인원의 적절성 등 대한 서류검토에 의한 평가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

6. 참가업체 자격조건

-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 단체

7. 기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배제 및 취소됩니다.
- 신청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032-560-44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 탁 신 청 서

1. 시설명 :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2. 신청자 기재사항

법인(단체) 명		법 인 구 분	시설(), 지원()
허가(등록)기관		허가(등록)일자	
허가(등록)번호		법인(단체)목적사업	
대표 성명		대표이사 주민번호	
대표 주소			
법인(단체) 현 소재지			
재 정 상 태	동산 :	원, 부동산 :	원

3. 제출서류

- 가. 사업계획서
 나.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대표자 이력서
 라. 등기부등본 또는 어촌계 현황 1부.

4. 약정사항

-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단체)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1154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검암1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검암1구역	서구 검암동 635번지	663,302.9	-	663,302.9	

나. 용도지역, 지구의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63,302.9	-	663,302.9	1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396,324.1	-	396,324.1	69.8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1,989.1	-	151,989.1	22.9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4,989.7	-	114,989.7	17.3	

다. 도시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도 로 :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합 계		15,974	88	1,992	11	10,416	60	3,566	17
일 반 도 로	대로	-	-	-	-	-	-	-	-
	중로	3,113	7	-	-	2,109	3	1,004	4
	소로	12,407	68	1,942	9	8,098	53	2,367	6
보 행 자 전용도로	중로	49	2	-	-	-	-	49	2
	소로	405	11	50	2	209	4	146	5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69	18~25	보조 간선	1,507	검암동 산19 남측지구계	대로1-19 (검암동71-3)	일반 도로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2	170	15~16	국지 도로	82	중로2-169	중로3-141	일반 도로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중로	2	184	18~25	보조 간선	520 (2,420)	검암동5-1 (서측지구계)	대로1-19	일반 도로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3	72	12	집산 도로	194	소로3-4	소로1-3	일반 도로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3	138	12	국지 도로	323	검암동 244-3	중로 2-16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3	139	12	국지 도로	325	중로 2-169	중로 3-14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3	140	12	특수 도로	24	대로 1-19	중로 3-139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3	141	12	국지 도로	162	중로 2-170	중로 3-142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중로	3	142	12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중로 3-141	보행자 도로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	10~16	국지 도로	1,061	중로 2-169	중로 2-16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75	중로 3-72	소로 2-1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282	소로 1-20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4	10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2-44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5	10~12	국지 도로	254	중로 2-184	중로 3-13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32	중로 2-169	소로 2-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34	중로 2-169	소로 2-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6	10	국지 도로	32	중로 2-169	소로 2-1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7	8	국지 도로	36	중로 2-184	소로 2-6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8	10	국지 도로	36	중로 2-184	소로 2-6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0	10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1-3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58	대로 1-1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209	중로 3-141	중로 2-17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33	소로 1-2	소로 1-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33	소로 1-2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107	소로 1-2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216	소로 2-10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319	소로 1-1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158	소로 2-26	소로 2-23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113	소로 1-3	소로 2-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9	8	국지 도로	130	소로 1-3	소로 2-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62	소로 2-18	소로 2-1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66	중로 2-169	소로 1-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2	8	국지 도로	120	소로 1-3	소로 2-2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3	8	국지 도로	220	중로 3-138	소로 1-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4	8	국지 도로	62	중로 3-138	검암4공원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5	8	국지 도로	130	소로 2-23	소로 2-2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6	8	국지 도로	32	소로 1-1	소로 2-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7	8	국지 도로	244	소로 1-3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93	소로 2-111	소로 2-2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29	8	국지 도로	132	소로 2-28	소로 2-2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0	8	국지 도로	34	소로 1-1	소로 2-2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1	8	특수 도로	34	중로 2-169	소로 2-111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2	8	국지 도로	109	중로 2-16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6	8	특수 도로	109	중로 2-169	소로 3-4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7	8	국지 도로	79	소로 1-1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8	8	특수 도로	34	중로 2-169	소로 2-111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39	8	국지 도로	98	소로 2-37	소로 2-10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0	8	국지 도로	231	중로 3-138	소로 2-4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1	8	국지 도로	191	중로 3-138	소로 2-4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2	8	특수 도로	32	소로 1-1	소로 2-40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3	8	국지 도로	256	중로 3-139	소로 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4	8	국지 도로	615	중로 3-139	소로 2-4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5	8	국지 도로	214	소로 1-1	소로 2-4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6	8	국지 도로	225	중로 3-139	소로 2-4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7	8	국지 도로	121	소로 2-45	소로 2-4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8	8	국지 도로	130	소로 2-45	소로 2-4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49	8	국지 도로	110	소로 1-5	소로 2-4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0	8	국지 도로	32	중로 3-139	소로 2-4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1	8	국지 도로	76	중로 2-169	소로 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2	8	국지 도로	115	중로 2-16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3	8	국지 도로	259	중로 2-184	소로 2-5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4	8	국지 도로	231	중로 2-184	소로 2-5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5	8	국지 도로	110	종로 2-16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6	8	국지 도로	206	종로 2-184	소로 2-6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7	8	국지 도로	109	소로 2-56	소로 3-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8	8	국지 도로	113	소로 2-56	소로 3-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59	8	국지 도로	204	종로 2-169	연희동 73-1 남측지구계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0	8	국지 도로	134	소로 2-59	소로 3-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1	8	국지 도로	79	소로 2-59	소로 3-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2	8	국지 도로	107	소로 1-1	소로 3-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3	8	국지 도로	106	소로 2-65	소로 2-6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4	8	국지 도로	26	소로 1-17	소로 3-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5	8	국지 도로	242	소로 2-62	소로 2-6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6	8	국지 도로	92	소로 2-65	소로 3-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7	8	국지 도로	30	종로 2-169	소로 2-5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9	8	국지 도로	68	소로 1-1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11	8	국지 도로	509	소로 1-3	소로 1-1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10	종로 2-16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1,379	종로 2-184	소로 2-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305	중로 2-184	소로 2-5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392	대로 1-19	중로 2-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7	6	특수 도로	26	소로 2-21	3호어린이공원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8	6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2-22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2	6	특수 도로	25	대로 1-19	소로 2-23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4	6	특수 도로	36	중로 3-139	소로 2-111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5	6	특수 도로	34	중로 2-169	소로 2-46	보행자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86	소로 2-58	소로 2-60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95	중로 2-170	소로 2-14	일반 도로	-	인고2000-1 13 (2000.6.30)	

2) 주 차 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검암1주차장	노외 주차장	검암동 607-1	2,653.9	-	2,653.9	인고93-130 (`93.9.28)	
기정	2	검암2주차장	노외 주차장	검암동 659	2,795.9	-	2,795.9	인고93-130 (`93.9.28)	
	계		2개소		5,449.8	-	5,449.8		

3) 공 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검암2 근린공원	장모루 근린공원	근린공원	검암동 594-2	5,703.6	-	5,703.6	인고93-130 (`93.9.28)	
변경	2	검암2 어린이공원	간재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07-2	2,500.2	-	2,500.2	인고93-130 (`93.9.28)	
기정	10	검암 근린공원	검암 근린공원	근린공원	검암동 636-9	654.2 (296,308.2)	-	654.2 (296,308.2)	건고66-2701 (`66.8.31)	()는 전체 면적
변경	3	검암3 어린이공원	중동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13-5	4,224.6	-	4,224.6	인고93-130 (`93.9.28)	
변경	4	검암4 어린이공원	검바위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19-5	2,040.0	-	2,040.0	인고93-130 (`93.9.28)	
변경	5	검암5 어린이공원	과기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57-2	2,394.7	-	2,394.7	인고93-130 (`93.9.28)	
기정	6	검암6 어린이공원	빈정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81	6,983.5	-	6,983.5	인고93-130 (`93.9.28)	
신설	7	-	검암 소공원	소공원	검암동 636-6	-	증)640.5	640.5		
	계			8개소		24,500.8	증)640.5	25,141.3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장모루 근린공원	◦ 공원 시설명 변경	◦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
2	간재울 어린이공원	◦ 공원 시설명 변경	◦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
3	중동어린이공원	◦ 공원 시설명 변경	◦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
4	검바위 어린이공원	◦ 공원 시설명 변경	◦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
5	과기 어린이공원	◦ 공원 시설명 변경	◦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
6	빈정 어린이공원	◦ 공원 시설명 변경	◦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
7	검암 소공원	◦ 공원(소공원) 신설 - 640.5㎡	◦ 서인천고등학교 앞 학생들의 휴식공간과 주민을 위한 소공원 지정

4) 녹 지 :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검암1녹지	완충녹지	검암동 595-1~666-4	3,794.4	-	3,794.4	인고93-130 (`93.9.28)	
	계		1개소		3,794.4	-	3,794.4		

5) 학 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초등학교	초등학교	검암동 629-3	11,048.7	-	11,048.7	인고93-130 (`93.9.28)	
기정	2	중학교	중학교	검암동 619-4	12,307.4	-	12,307.4	인고93-130 (`93.9.28)	
기정	3	서인천 고등학교	고등학교	검암동 636-7	23,653.1	-	23,653.1		
	계		3개소		47,009.2	-	47,009.2		

6) 공 공 청 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동 사 무 소	검암동 606-8	1,050.1	-	1,050.1	인고93-130 (`93.9.28)	
기정	2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검암동 606-9	1,050.3	-	1,050.3	인고93-130 (`93.9.28)	
기정	3	공공청사	우 체 국	경서동 660-2	679.8	-	679.8	인고93-130 (`93.9.28)	
기정	4	공공청사	파 출 소	경서동 660-3	682.2	-	682.2	인고93-130 (`93.9.28)	
	계		4개소		3,462.4	-	3,462.4		

7) 하 수 도 : 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하수도	오수펌프장	검암동 594-1	411.5	-	411.5	인고2000-113 (2000.6.30)	
	계				411.5	-	411.5		

8)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사회복지시 설	검암동 679-3	1,676.1	-	1,676.1	인고2004-258 (2005. 1. 3)	
	계			1,676.1	-	1,676.1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A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2	58,233.4	2	380.4	공동건축
		3	45,001.4	
		4	3,806.7	
		5	6,781.1	공동건축
		6	2,263.8	
34	12,517.3	1	10,222.5	공동건축
		2	745.0	
		3	1,549.8	
37	11,925.9	1	11,925.9	
56	11,746.4	1	11,293.8	공동건축
		2	452.6	

2) 근린생활시설용지

필지규모 600㎡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수 지정.

(단,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300㎡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6	2,715.2	1	810.9	4
		2	1,098.0	5
		3	806.3	4
7	5,255.3	1	1,460.7	6
		2	467.6	2
		3	696.2	2
		4	1,152.1	4
		5	302.2	-
		6	370.9	2
		7	805.6	4
8	4,438.0	1	264.5	-
		2	1,110.6	5
		3-1-1	301.2	-
		3-1-2	306.2	-
		3-1-3	305.4	-
		3-1-4	624.5	2
		3-1-5	305.5	-
		3-1-6	311.1	-
		3-1-7	306.9	-
		3-2	270.0	-
		4	332.1	2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12	3,721.1	1	559.8	2
		2	523.1	2
		3	308.0	-
		4	167.1	-
		5	1,552.2	3
		6	330.5	-
		7	280.4	-
21	5,547.4	1	156.3	-
		2	235.2	-
		3	464.0	2
		4	668.0	2
		5-1	991.9	2
		5-2	2,040.0	5
		5-3	992.0	2
23	4,023.7	1	208.8	공동건축
		2	114.1	
		3	213.2	-
		4	523.5	-
		5	808.4	-
		6	718.7	2
		7	1,437.0	4
24	3,189.3	1	394.2	-
		2	1,082.4	3
		3-1	396.1	-
		3-2	430.0	-
		3-3	886.6	2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25	973.9	1	413.1	-
		2	560.8	2
26	1,654.2	1	121.4	-
		2	746.5	3
		3	786.3	3
40	3,554.9	1	1,371.9	6
		2	2,183.0	10
55	3,555.2	1	2,019.7	8
		2	1,535.5	6
58	4,745.5	1-1	1,322.4	6
		1-2	539.4	2
		1-3	539.4	2
		2	1,630.2	8
		3	714.1	2
77	3,854.6	1	1,886.4	8
		2	1,174.0	4
		3	794.2	3
82	3,711.4	1	394.4	2
		2	117.1	-
		3	230.9	-
		4	502.8	2
		5	159.9	-
		6	207.0	-
		7	235.3	-
		8	384.1	2
		9	221.5	-
		10	216.2	-
		11	129.8	-
		12	230.2	-
		12-1	90.0	-
		13	154.1	-
		14	311.0	-
		15	127.1	-
85	1,260.1	1	1,260.1	4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86	4,194.3	1-1	330.3	-
		1-2	342.7	-
		1-3	231.2	-
		2	218.4	-
		3	334.0	-
		4	311.3	-
		5	197.1	-
		6	1,708.1	3
		7	186.3	-
		8	334.9	-
91	3,585.2	1	694.1	3
		2	752.5	2
		3	600.9	2
		4	124.6	-
		5-1-1	378.1	2
		5-1-2	218.9	-
		5-2	816.1	4
92	5,498.6	1	1,319.7	6
		2	378.5	2
		3	1,902.4	8
		4	1,021.6	4
		5	509.0	2
		6	367.4	2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93	3,769.4	1	1,081.8	2
		2	1,007.3	2
		3	499.8	-
		4	424.1	-
		5	270.8	-
		6	485.6	-
94	4,165.7	1	294.1	-
		2	284.2	-
		3	139.2	-
		4	515.0	2
		5-2	363.1	2
		5-3	316.6	-
		5-4	342.5	-
		6	262.5	-
		7	202.7	-
		8	246.9	-
		9	213.2	-
		10	225.1	-
		11	150.8	-
		12	183.7	-
		13	184.0	-
		14	242.1	-
100	2,592.6	1	628.3	2
		2	336.8	-
		3	378.2	-
		4-1	350.4	-
		4-2-1	329.6	-
		4-2-2	334.6	-
		5	234.7	-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101	2,526.9	1	923.0	4
		2	707.9	4
		3	896.0	4
103	3,784.1	1-1	301.5	-
		1-2	262.5	-
		1-3	222.1	-
		2	165.1	-
		3	222.4	-
		4	315.4	-
		5	984.8	5
		6	175.1	-
		7	221.7	-
		8	156.6	-
		9	756.9	3
106	5,585.6	1	195.0	-
		2	469.3	2
		3	209.1	-
		4	839.4	4
		6	487.3	2
		5	245.3	-
		7	168.3	-
		8	741.9	2
		9	315.6	-
		10	325.5	2
		11	118.8	-
		12	237.5	-
		13	159.0	-
		14	245.1	-
		15	443.5	2
		16	385.0	2

3) 단독주택용지

필지규모 400㎡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수 지정

(단,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200㎡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 단독주택용지(C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18	4,502.8	1	223.8	-
		2-1	639.1	4
		2-2	398.6	2
		2-3	523.5	2
		3	746.1	2
		4-1	200.5	-
		4-2	893.0	3
		4-3	496.0	2
		5	382.2	2
19	2,987.7	1-1	405.1	2
		1-2	380.9	2
		1-3	293.0	-
		2	195.6	-
		3	310.2	-
		4	149.2	-
		5	120.1	-
		6	156.7	-
		7	190.7	-
		8	146.0	-
		9	144.9	-
		10	495.3	2
20	3,359.9	1	1,428.0	6
		2	421.7	2
		3	570.7	2
		4	779.4	3
		5	160.1	-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25	5,566.6	3	1,459.6	5
		4	1,395.2	5
		5-1	517.7	2
		5-2	532.2	2
		6	1,049.8	4
		7	214.3	공동건축
		8	113.1	
		9	284.7	-
26	1,731.9	5	462.0	2
		6	244.9	-
		7	1,025.0	4
27	1,322.1	1	421.4	2
		2	459.2	2
		3	441.5	2
28	2,918.6	1	322.0	-
		2	423.4	2
		3	633.4	3
		4	274.7	-
		5-1	835.3	4
		5-2	429.8	2
29	3,590.7	1-1	441.8	2
		1-2	208.0	-
		1-3	208.0	-
		1-4	208.0	-
		1-5	208.0	-
		1-6	208.0	-
		1-7	208.0	-
		1-8	208.0	-
		1-9	208.0	-
		1-10	208.0	-
		1-11	208.0	-
		1-12	441.5	2
		2	333.6	-
		3	293.8	-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30	4,675.1	1	1,229.1	3
		2	484.3	-
		3	393.4	-
		4	295.4	-
		5	465.1	-
		6	1,192.1	4
		7	615.7	2
31	2,931.8	1	396.3	-
		2	777.5	2
		3	1,122.7	3
		4	406.3	2
		5	229.0	-
33	3,018.8	1	1,300.0	5
		3	1,468.1	8
		4	250.7	-
41	3,268.4	1	959.5	4
		2-1-1	899.8	4
		2-1-2	898.9	4
		3	510.2	2
42	4,197.7	1	2,707.0	12
		2	1,490.7	6
43	5,218.1	1	293.3	-
		2	213.1	-
		4	253.4	-
		5	720.2	2
		6	277.3	-
		7	106.3	-
		8	389.3	-
		9	649.5	2
		10-1	991.7	3
		10-2-1	772.1	-
		10-2-2	551.9	-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44	4,200.6	1	246.8	-
		2	274.4	-
		3	104.0	-
		4	127.8	-
		5	385.2	2
		6	380.8	2
		8	167.9	-
		9	219.2	-
		10	317.5	-
		11	161.7	-
		12	185.1	-
		13	427.8	2
		14	127.4	-
		15	195.7	-
		16	161.0	-
		17	214.3	-
		18	145.7	-
		19	358.3	-
45	5,997.3	1	1,128.7	5
		2	572.8	2
		3-1	243.5	-
		3-2	297.4	-
		4	111.1	-
		5	345.7	-
		6	364.5	2
		7	399.3	2
		8	237.1	-
		9	826.5	4
		10	323.0	-
		11	233.2	-
		12	135.9	-
		13	154.6	-
		14	94.4	-
		15	529.6	2

가구 번호	가구면적(㎡)	기 정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46	1,451.9	1-1	385.5	-
		1-2-1	288.7	-
		1-2-2	288.6	-
		2	200.0	-
		3	289.1	-
47	2,558.5	1	566.4	3
		2	640.2	3
		3	191.4	-
		4-1	284.2	-
		4-2	876.3	4
50	1,422.8	1	949.3	4
		2	290.0	-
		3	90.2	-
		4	93.3	-
51	4,943.5	1	922.5	4
		2-1	422.3	-
		2-2	264.7	-
		2-3	264.7	-
		2-4	264.7	-
		2-5	264.7	-
		2-6	264.7	-
		2-7	264.7	-
		2-8	422.3	-
		2-9	264.7	-
		2-10	264.7	-
		2-11	264.7	-
		2-12	264.7	-
		2-13	264.7	-
		2-14	264.7	-
53	2,403.1	2	201.3	-
		3	403.8	2
		4	1,147.5	4
		5	384.2	2
		6	266.3	-
54	4,957.0	1	243.2	-
		2	323.1	-
		3	521.6	2
		4	203.0	-
		5	1,156.9	4
		6	706.2	2
		7	1,387.6	6
		9	415.4	2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59	2,761.5	1	359.6	-
		2-1	356.9	-
		2-2	356.9	-
		2-3	357.0	-
		2-4	357.0	-
		2-5	357.1	-
		2-6	357.0	-
		3	260.0	-
60	3,110.9	1-1	1,398.2	6
		1-2	668.4	2
		2	327.4	-
		3	201.8	-
		4	192.6	-
		5	322.5	-
61	3,309.7	1-1-1	283.7	
		1-1-2	283.5	
		1-2	597.9	2
		2	730.0	2
		3	206.1	-
		4	944.2	4
		5	264.3	-
62	5,726.7	1	1,252.9	6
		2-1	385.0	2
		2-2	396.6	2
		3	1,822.7	5
		4	222.9	-
		5	120.5	-
		6	255.1	-
		7	1,271.0	4
63	4,948.0	1	1,122.5	4
		2	411.1	2
		3	136.0	-
		4	379.9	2
		5	2,379.0	11
		6	519.5	2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64-1	1,523.8	1	90.1	-
		2	385.9	2
		3	407.3	2
		4	640.5	-
64-2	2302.1	1	870.6	4
		2-1	478.6	2
		2-2	952.9	4
64-3	1,654.6	1	1,654.6	4
65	3,887.7	1	832.5	4
		2	1,838.2	6
		3	370.4	-
		4	162.0	-
		5	168.0	-
		6	516.6	2
66	477.3	1	96.3	-
		2	381.0	2
67	3,160.0	1	720.6	3
		2	689.7	3
		3	155.1	-
		4	885.5	4
		5	311.8	-
		6	182.6	-
		7	116.7	공동건축
		8	98.0	
68	3,114.9	1	894.0	4
		2	559.1	2
		3	420.8	2
		4	259.2	-
		5	113.1	-
		6	110.7	-
		7	115.5	-
		8	145.6	-
		9	496.9	2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69	3,740.6	1-1	395.3	-
		1-2	231.6	-
		2	876.7	4
		3-1	292.7	-
		3-2	284.5	-
		3-3	284.6	-
		3-4	292.7	-
		4	210.0	-
		5	174.1	-
		6	117.8	-
		7	255.7	-
		8	170.5	-
		9	154.4	-
70	3,9991.0	1-1	248.0	-
		1-2	231.5	-
		1-3	231.6	-
		1-4	281.0	-
		1-5	259.6	-
		1-6	259.3	-
		2	112.8	-
		3-1	887.1	4
		4-1	237.8	-
		4-2	238.0	-
		4-3	232.0	-
		4-4	288.4	-
		4-5	244.0	-
		4-6	239.9	-
71	3,684.9	1-1	231.1	-
		1-2	228.1	-
		1-3	228.1	-
		1-4	228.1	-
		2	979.9	4
		3	777.2	3
		4	267.8	-
		5	744.6	4
72	3,683.0	1	1,032.0	4
		2-1	1,587.4	6
		3	144.3	-
		4	487.1	2
		5	432.2	2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 할 가 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73	3,485.4	1	105.9	-
		2	96.9	-
		3	331.8	-
		4-1	383.0	2
		4-2	380.3	2
		5	227.9	-
		6	472.9	2
		7	254.4	-
		8	292.9	-
		9	371.7	2
		10	344.2	-
		11	223.5	-
74	2,650.1	1	681.9	3
		2	297.5	-
		3	378.1	2
		4	1,292.6	6
75	2,118.7	1	785.3	3
		2	147.7	-
		3	1,185.7	6
76	4,707.2	1	760.4	4
		2	3,505.9	8
		3	347.4	-
		4	93.5	-
78	5,359.8	1-1	1,031.1	3
		1-2-1-1	1,052.7	3
		1-2-1-2	340.4	-
		1-2-2	348.2	-
		2	2,587.4	8
79	4,938.6	1	665.8	2
		2	628.0	2
		3	1,316.8	4
		4-1	469.6	-
		4-2	466.2	-
		5	1,392.2	4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80	1,576.7	1	462.8	2
		2	454.1	2
		3	659.8	2
81	5,358.2	1	677.9	2
		2	1,023.4	3
		3	866.9	2
		4	366.0	-
		5	150.8	-
		6	204.2	-
		7	303.3	-
		8	195.1	-
		9	498.7	2
		10	396.4	-
		11	415.0	2
		12	260.5	-
83	5,268.2	1	313.6	-
		2	412.1	2
		3	232.5	-
		4	235.2	-
		5	398.2	-
		6-1	677.3	2
		6-3	299.9	-
		6-4	339.9	-
		6-5	362.0	-
		6-6	362.0	-
		6-7	362.0	-
		7	217.7	-
		8	467.1	-
		9	588.7	2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87	4,231.6	1	699.0	3
		2	96.8	-
		3-1	295.3	-
		3-2	295.3	-
		3-3	295.3	-
		3-4	294.0	-
		4	260.6	-
		5	166.4	-
		6	205.4	-
		7	221.9	-
		8	247.7	-
		9	123.1	-
		10	231.8	-
		11	236.3	-
		12	369.6	-
88	7,913.4	13	96.4	-
		14	96.7	-
		1-1	739.8	-
		1-2	412.0	-
		1-3	427.6	-
		1-4	435.8	-
		1-5	492.9	-
		1-6	499.7	-
		1-7	968.6	-
		1-8	989.8	-
		1-9	498.8	-
		1-10	484.2	-
		1-11	421.3	-
		1-12	409.1	-
		1-13	399.3	-
		1-14	734.5	-

가구 번호	가구면적(㎡)	기 정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89	3,816.7	1	2,872.9	10
		3	228.3	-
		4	186.0	-
		5	529.5	2
90	2,452.2	1	1,566.2	6
		2-1	428.0	-
		2-2	458.0	-
95	5,973.0	1	470.5	2
		2	319.2	-
		3	259.2	-
		4-1	363.9	-
		4-2	363.9	-
		5	1,494.5	6
		6	1,863.2	6
		7	145.6	-
		8	190.5	-
		9	260.4	-
		10	107.1	-
96	1,241.6	11	135.0	-
		2	325.6	-
		3	134.6	-
		4	104.6	-
		5	217.1	-
97	2,041.9	6	459.7	2
		2	1,126.7	4
		3	438.2	2
		4	274.5	-
98	2,175.6	5	202.5	-
		1	833.7	3
		2	558.1	2
		3	181.0	-
		4	94.5	-
		5	229.1	-
99	4,931.3	6	279.2	-
		1	1,138.0	4
		2-1	796.3	2
		2-2	826.6	2
		3	651.2	2
		4	198.9	-
		5	500.1	2
		6	593.7	2
7	226.5	-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100	1,151.1	6	189.9	-
		7	346.5	-
		8	614.7	2
102	1,690.2	1	614.2	2
		2	1,076.0	4
104	4,042.8	1-1	570.0	2
		1-2-1	461.2	-
		1-2-2	297.5	-
		2-1	484.8	2
		2-2	653.9	2
		3	141.8	-
		4	315.9	-
		5	400.8	-
		6	372.0	-
		7	344.9	-
105	3,371.3	1	1,687.9	5
		2-1	415.1	2
		2-2	501.4	2
		3	327.7	2
		4	439.2	2
107	9,486.6	1	4,229.9	10
		2	1,507.9	4
		3	575.3	2
		4	413.5	2
		5	191.0	-
		6	2,569.0	6
108	3,101.1	1	3,101.1	13
110	2,683.5	1	577.5	2
		2	1,017.9	4
		3	387.7	2
		4	483.9	2
		5	216.5	-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111	4,136.7	1	3,995.6	12
		2	141.1	-
112	2,962.6	1	360.7	-
		2	1,900.1	5
		3	572.5	2
		4	129.3	-

4) 종교집회장용지 : 변경없음

■ 종교집회장용지(F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변 경				가구 번호	변 경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44	1,308.0	7	271.0	공동건축	44	1,308.0	621-19	271.0	공동건축
		20	1,037.0				621-6	1,037.0	
68	511.5	10	511.5		68	511.5	653-4	511.5	
96	2,961.5	7	2,961.5		96	2,961.5	657-1	2,961.5	

※ 변경내용 : 사업완료에 따른 지번확정으로 획지위치(지번) 변경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A용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2(2~6),34,37,56	2(2~6),34,37,56 (공동주택지 A용도)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A 지정 및 권장용도	◦ 변경 없음
			불허용도	◦ 별표1의 A 불허 용도	
		건 폐 율	◦ 20%이하	◦ 변경 없음	
		용 적 률	◦ 250%이하	◦ 변경 없음	
		높 이	◦ 19층이하	◦ 변경 없음	
		형 태	◦ 별표2의 A	◦ 변경 없음	
		배 치	◦ 별표3의 A	◦ 변경 없음	
		색 채	◦ 별표4의 A	◦ 변경 없음	
		건 축 선	-	-	

2) 근린생활시설 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6(1~3),7,8,12,21, 23(1~7),24,25(1~ 2),26(1~3),40,55, 58,77,82,85(1),86 ,91,92),93,94,100 (1~4-2),101,103, 106	6(1~3),7,8,12,21, 23(1~7),24,25(1~ 2),26(1~3),40,55, 58,77,82,85(1),86 ,91,92),93,94,100 (1~4-2),101,103, 106 (근린생활시설용지 B용도)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B 지정 및 권장용도	◦ 변경 없음
			불허용도	◦ 별표1의 B 불허용도	
		건 폐 율	◦ 50%이하	◦ 변경 없음	
		용 적 률	◦ 200%이하	◦ 변경 없음	
		높 이	◦ 4층이하	◦ 변경 없음	
		형 태	◦ 별표2의 B	◦ 변경 없음	
		배 치	◦ 별표3의 B	◦ 변경 없음	
		색 채	◦ 별표4의 B	◦ 변경 없음	
		건 축 선	-	-	

3)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C1용도) 결정 조서 : 변경(8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C)	변 경(C1)
18(1,2,2-1,2-2,2-3, 3,4-1,4-2,4-3), 19(1-1,1-2,1-3,2,6 ~10),20(5),25(3,5-2, 6),27(1~3),28(1~3,5 -1),29(1-7~12),30(1 ~7),31(1,2,5),42(1~ 2),43(1,2,4~9,10-1, 10-2-1~2),44(14~1 9),45(4~7),46(1-1,1 -2-1~2,2,3),47(1~3, 4-1-1~2),50(1~4), 53(2~4),54(1,4),59(2 -4~5,3),60(1-1~2,2 ~5), 61(1-1-1~2,5),62(2 -2,3~4),64-1(1~3), 64-2(1, 2-1~2),64-3(1),65(2),66(2),67(1~8),68(1 ~9), 69(1-1~2,2,3-1~4,4 ~9),70(1-4~6,4-1), 72(3~4),73(3,4-1,5~ 6),74(2~3),75(2),76(1~4),78(1-1,1-2-1- 1~2,1-2-2),79,(1~3, 4-1~2,5),80(1~3),81 (1,9~12),83(6-5~7,7 ~9),87 (1~2,3-1~3,5~14),8 8(1,1-1~6,1-1~14), 89(3),90(1,2-1~2),9 5(2~3,7~8),96(2~6), 97(4~5),102(1~2),10 4(1-1,1-2-1~2,2-1 ~2,3~7),105(1,2-1~ 2,3~4),107(1~5),110 (1~5),111(1~2),112(1~4)	용도	허용 용도	별표1의 C 지정 및 권장용도	별표1의 C1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 용도	별표1의 C 불허용도	별표1의 C1 불허용도
	건 폐 율	50%이하	변경 없음	
	용 적 륜	150%이하	변경 없음	
	높 이	3층이하	변경 없음	
	형 태	별표2의 C	별표2의 C1	
	배 치	별표3의 C	별표3의 C1	
	색 채	별표4의 C	변경 없음	
단독주택용지 C1	건 축 선	-	-	

■ 단독주택용지(C2용도) 결정 조서 : 변경(10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C)	변 경(C2)
18(5),19(3~5),20(1~4),25(4,5-1,6~9),28(4,5-2),29(1-1~6,2~3),31(3~4),41(1,2-1-1~2,3),44(1~6,8~13),45(1~2,3-1~2,8~11,15),51(2-8~14),53(5~6),54(2~3,5),59(2-6),61(1-2,2~4),62(2-1,5~7),70(1-1~3,2,3-1,4-2~6),71(5),72(5),73(1~2),74(1,4),76(2),83(3~5,6-1,6-3~4),95(1,4-1~2,5~6,9~11),97(2~3),98(3~5),99(1),107(1)	18(5),19(3~5),20(1~4),25(4,5-1,6~9),28(4,5-2),29(1-1~6,2~3),31(3~4),41(1,2-1-1~2,3),44(1~6,8~13),45(1~2,3-1~2,8~11,15),51(2-8~14),53(5~6),54(2~3,5),59(2-6),61(1-2,2~4),62(2-1,5~7),70(1-1~3,2,3-1,4-2~6),71(5),72(5),73(1~2),74(1,4),76(2),83(3~5,6-1,6-3~4),95(1,4-1~2,5~6,9~11),97(2~3),98(3~5),99(1),107(1) 단독주택용지 C2	용도	권장 용도	◦ 별표1의 C 지정 및 권장용도	◦ 별표1의 C2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 용도	◦ 별표1의 C 불허용도	◦ 별표1의 C2 불허용도
		건 폐 율		◦ 50%이하	◦ 변경 없음
		용 적 륜		◦ 150%이하	◦ 변경 없음
		높 이		◦ 3층이하	◦ 변경 없음
		형 태		◦ 별표2의 C	◦ 별표2의 C2
		배 치		◦ 별표3의 C	◦ 별표3의 C2
		색 채		◦ 별표4의 C	◦ 변경 없음
		건 축 선		-	-

■ 단독주택용지(C3용도) 결정 조서 : 변경(12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C)	변 경(C3)
33(1,3,4),51(1,2-1~7),53(4),54(6~8),59(1,2-1~3),62(1),63(1,3,5~6),65(1,3~6),71(1-1~4,2),72(1,2-1),73(4-2,7~11),75(1,3),78(2),81(2~8),83(1~2),87(3-4,4),88(1-7~8),89(1,4~5),107(1,6),108(1)	33(1,3,4),51(1,2-1~7),53(4),54(6~8),59(1,2-1~3),62(1),63(1,3,5~6),65(1,3~6),71(1-1~4,2),72(1,2-1),73(4-2,7~11),75(1,3),78(2),81(2~8),83(1~2),87(3-4,4),88(1-7~8),89(1,4~5),107(1,6),108(1) 단독주택용지 C3	용도	권장 용도	별표1의 C 지정 및 권장용도	별표1의 C3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 용도	별표1의 C 불허용도	별표1의 C3 불허용도
		건 폐 율		50%이하	변경 없음
		용 적 륜		150%이하	변경 없음
		높 이		3층이하	변경 없음
		형 태		별표2의 C	별표2의 C3
		배 치		별표3의 C	별표3의 C3
		색 채		별표4의 C	변경 없음
		건 축 선		-	-

4) 교육시설용지

■ 교육시설용지(D용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46(4),57,64	46(4),57,64 (교육시설용지D용도)	용 도	◦ 학교	◦ 변경 없음
		건 폐 율	◦ 30%이하	◦ 변경 없음
		용 적 률	◦ 150%이하	◦ 변경 없음
		높 이	◦ 5층이하	◦ 변경 없음
		형 태	-	-
		배 치	-	-
		색 채	-	-
		건 축 선	-	-

5) 공공청사용지

■ 공공청사용지(E용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23(8,9),85(2,3)	23(8,9),85(2,3) (공공청사용지E용도)	용 도	◦ 공공청사	◦ 변경 없음
		건 폐 율	◦ 50%이하	◦ 변경 없음
		용 적 률	◦ 200%이하	◦ 변경 없음
		높 이	◦ 4층이하	◦ 변경 없음
		형 태	-	-
		배 치	-	-
		색 채	-	-
		건 축 선	-	-

6) 종교용지

■ 종교용지(F용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44(7,20),68(10),96(7)	44(7,20),68(10),96(7) (종교용지F용도)	용 도	◦ 종교집회장	◦ 변경 없음
		건 폐 율	◦ 50%이하	◦ 변경 없음
		용 적 률	◦ 200%이하	◦ 변경 없음
		높 이	◦ 4층이하	◦ 변경 없음
		형 태	-	-
		배 치	-	-
		색 채	-	-
		건 축 선	-	-

7) 사회복지시설용지

■ 사회복지시설용지(G용도) 결정 조서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90(3)	90(3) (사회복지시설용지G 용도)	용 도	◦ 사회복지 시설	◦ 별표1G용도의 지 정 및 권장용도
		건 폐 율	◦ 50%이하	◦ 변경 없음
		용 적 률	◦ 200%이하	◦ 변경 없음
		높 이	◦ 4층이하	◦ 변경 없음
		형 태	-	-
		배 치	-	-
		색 채	-	-
		건 축 선	-	-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별표 1] : 건축물 용도 분류표 : 변경

[별표 2] : 건축물 형태 분류표 : 변경

[별표 3] : 건축물 배치 분류표 : 변경

[별표 4] :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 변경 없음

[별표 5] : 차량동선·주차시설·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 : 변경

[별표 6] :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별표 7]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 변경 없음

[별표 8] : 기타사항 : 변경 없음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기정)

구 분	A	B	C	D	E	F	G
지 정 용 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중 아파트	-	-	◦ 학교	◦공공청사	◦종교 집회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
권 장 용 도	-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 집회장 (다종 및 확장장치 없는 것에 한함)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	-	-
불 허 용 도	◦ 지정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						

주1) 단독주택지(C)의 경우 경사지붕내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를 1.5m초과 1.8m이하로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는 다락층을 포함하여 4층이하, 용적률 180%이하로 완화

주2)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 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주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가구 및 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

건축물 용도 분류표 (변경)

구분	A	B	C1	C2	C3	D ~ G
지정용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	-	◦변경 없음
권장용도	-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장장치 없는 것에 한함)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 부동산 중개업소 -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 부동산 중개업소 -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 12m 이상도로에 12m 접함)	◦ 변경없음 (D~F용도) ◦ G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식품제조업) (단 결식아동 및 사회복지사업에 한하며 지하1층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소매점 ◦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					

주1) 단독주택지(C)의 경우 경사지붕내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를 1.5m초과 1.8m이하로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는 다락층을 포함하여 4층이하, 용적률 180%이하로 완화

주2)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 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 주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가구 및 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
- 주4)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다른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주5) 가설건축물 제한(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근 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
- 주6) 권장용도(C1,C2,C3)는 도로폭원에 따라 완하하고 있으나 도로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하는 획지)에 대해서는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 주7) 획지분할시 전면이 기준에 접한 도로 폭보다 적은 도로에 접할 경우, 좁은 도로변의 용도 적용

[별표 2]

건축물 형태 분류표 (기정)

용 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형 태
공 동 주 택 용 지	-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 ㄴ”자 형 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옥상의 이용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 ◦ 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단 독 주 택 용 지	-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 ◦ 옥상의 이용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 ◦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건축물 형태 분류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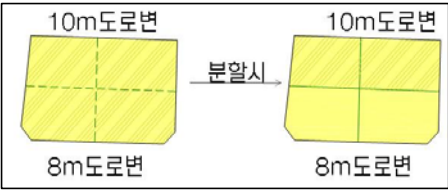
용 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형 태
공 동 주 택 용 지	-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 ㄴ”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근 령 생 활 시 용 지	-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옥상의 이용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 ◦ 근린생활시설의 1층 서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 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단 독 주 택 용 지 (C1,C2, C3)	-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단, 다른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 ◦ 옥상의 이용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 ◦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0m이하로 제한 ◦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 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별표 3]

건축물 배치 분류표 (기정)

용 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형 태
공 동 주 택 용 지	-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 담장 설치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 설치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높이 1.2m 이하) 설치를 권장 - 공원 및 녹지시설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담장(높이 1m이하) 설치 - 동일 블록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여 ◦ 담장설치불허구간 :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담장을 없애고 같은 동네로서의 공간형성) ◦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가급적 한가지로 통일토록 권장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 중로 2-169호선, 중로 2-184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단 독 주 택 용 지	-	◦ 중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 지정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 ◦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건축물 배치 분류표 (변경)

용 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형 태
공 동 주 택 용 지	-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 담장 설치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 설치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높이 1.2m 이하) 설치를 권장 - 공원 및 녹지시설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담장(높이 1m이하) 설치 - 동일 블록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여 - 담장설치불허구간 :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담장을 없애고 같은 동네로서의 공간형성) -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가급적 한가지로 통일토록 권장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 중로 2-169호선, 중로 2-184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단 독 주 택 용 지 (C1,C2,C3)	-	- 중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 지정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 -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 획지분할에 관한 사항  - 권장용도에 관한 사항 - 도로 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한 획지에 대한 기준은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별표 4]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변경 없음)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색채
공동주택용지	-	◦ 검암1구역 북측 및 서측은 Landmark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 ◦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 주변은 안정된 주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침착한 색조계열 사용
근린생활시설용지	-	◦ 주활동축으로서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단, 강조색은 가능) ◦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단독주택용지	-	◦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벽돌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량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 색채계획목표

- 색채계획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로서 주민들에게 심미감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느끼도록 하는 요소임
 -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색채 사용
 - 인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색채감의 조성
 - 구역내의 변화로운 색채 형성으로 식별성 및 미관의 개선
 - 대상주민 뿐만 아니라 도로를 통해 보여지는 가로경관의 시각효과 개선

■ 색채의 분류

- 자율적인 색채계획을 최대한 보장하되 색채사용의 범위를 명시하여 색채 적용의 융통성을 부여토록 함
-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 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 : 주조색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30%를 차지
 - 강조색 :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별표 5]

차량동선, 주차시설, 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 (기정)**기 타 사 항****■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 간선 및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1)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30m이내의 구간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10m이내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2) 공동주차통로

- 획지 2개소당 1개의 공동주차통로 설치를 유도하며 통로폭 최소 3 m이상 확보(단,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 선정 가능)

◦ 주차에 관한 계획

-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동진출입 유도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유도

■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기본방향**

- 보행활동 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
-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
-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차량동선, 주차시설, 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 (변경)

기 타 사 항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 간선 및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1)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30m이내의 구간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10m이내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2) 공동주차통로

- 획지 2개소당 1개의 공동주차통로 설치를 권장하며 통로폭 최소 3 m이상 확보(단,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 선정 가능)

◦ 주차에 관한 계획

-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동진출입 유도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유도

■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 기본방향

- 보행활동 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
-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
-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별표 6]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용 도	도면 표시	도 시 계 획 도 로	
도시 계획 도로	-	가 로 시설물	◦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토록 유도 ◦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복합적 기능을 갖도록 설치 ◦ 시설간에 통일성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하여 가로를 장식할 수 있도록 설치
		식 재	◦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별, 가로망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 인천시의 시목인 목백합 또는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 가로수는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떨어져 식재하며, 식재간격은 6~8m를 기준으로 함
		포 장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 보 도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 포장구획을 소단위로하여 친근감 유지 - 재료는 소형고압블럭 및 일반콘크리트블럭 등의 재료 사용 유도 ◦ 연 석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조 명 시 설	◦ 가로등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조절 - 조명등의 설치타입은 주변여건에 적합되도록 선택 ◦ 보행등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달도록 계획
		기 타 사 항	◦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 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별표 7]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변경 없음)

-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별표 8]

기 타 사 항 (변경 없음)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검암2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검암2구역	서구 검암동 506-1번지 일원	408,826.0	-	408,826.0	

나. 용도지역, 지구의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주거지역 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08,826.0	-	408,826.0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0,719.0	-	210,719.0	51.5	
	제2종일반주거지역	66,286.0	-	66,286.0	16.2	
	제3종일반주거지역	131,821.0	-	131,821.0	32.3	

■ 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 제한 내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	1	고도 지구	최고 고도 지구	검암동 519-1번지 일원	5층 이하	154,282.0	-	154,282.0	인고2000-113 (2000.6.30)	

다. 도시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1) 도 로 :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합 계		9,699	49	1,368	12	5,344	28	2,987	9
일 반 도	대로	-	-	-	-	-	-	-	-
	중로	1,533	5	-	-	1,059	3	474	2
	소로	7,864	38	1,261	10	4,260	24	2,343	4
보행자전용도로		302	6	107	2	25	1	170	3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69	18~25	보조 간선	783 (2,330)	대로 1-19 (검암동산19)	검암동71-3 북측지구계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2	171	15	국지 도로	157	중로 2-169	소로 3-23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중로	2	172	15	국지 도로	119	중로 2-169	소로 1-2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3	145	12	국지 도로	200	중로2-169	소로 2-7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중로	3	146	12	국지 도로	274	중로2-172	소로 3-23	일반 도로	-	인고2000-113 (2000.6.30)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424	소로 1-25	중로 3-14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7	10~16	국지 도로	123	중로2-169	소로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9	10~16	국지 도로	194	중로 2-169	소로 2-7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98	소로 1-9	중로 3-14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36	중로2-169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34	중로2-169	소로2-8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36	중로2-169	소로2-7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1	24	10	국지 도로	34	중로2-169	소로2-8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9	8	국지 도로	78	소로2-110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0	8	국지 도로	98	소로2-69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1	8	국지 도로	73	소로2-70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2	8	국지 도로	592	소로2-68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69	8	국지 도로	78	소로2-110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0	8	국지 도로	98	소로2-69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1	8	국지 도로	73	소로2-70	소로2-6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2	8	국지 도로	592	소로2-68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3	8	국지 도로	190	소로2-72	소로3-1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4	8	국지 도로	91	소로1-9	소로2-7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5	8	국지 도로	98	소로2-72	소로2-74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79	8	국지 도로	100	소로 1-9	종로 3-14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82	8	국지 도로	98	소로1-10	소로2-7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83	8~ 12	국지 도로	138	종로 2-169	종로 3-145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84	8	국지 도로	117	소로2-82	소로2-8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86	8	국지 도로	752	소로 1-6	종로 2-17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94	8	국지 도로	113	소로 2-96	소로 1-2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96	8	국지 도로	115	소로 1-27	소로 3-23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98	8	국지 도로	124	소로2-86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99	8	국지 도로	407	소로1-6	소로1-6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0	8	국지 도로	42	소로2-86	소로2-99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1	8	국지 도로	36	소로2-99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2	8	국지 도로	500	소로3-18	소로2-10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3	8	국지 도로	40	소로2-86	소로2-10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4	8	국지 도로	36	소로2-102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5	8	국지 도로	82	소로1-6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06	8	국지 도로	136	소로1-6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2	110	8	특수 도로	25	대로1-19	소로2-69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626	중로2-169	소로3-21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608	소로1-27	소로3-22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19	6	특수 도로	110	소로2-68	소로2-73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20	6	특수 도로	34	중로2-169	소로2-86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21	6	특수 도로	26	대로1-19	소로3-17	보행자 전용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56	대로1-19	소로3-18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1,053	중로1-169	소로1-27	일반 도로	-	인고93-130 (`93.9.28)	

2) 주 차 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	검암3주차장	노외 주차장	검암동 503-8	1,400.4	-	1,400.4	인고93-130 (`93.9.28)	
기정	4	검암4주차장	노외 주차장	검암동 515-1	1,760.2	-	1,760.2	인고93-130 (`93.9.28)	
	계		2개소		3,160.6	-	3,160.6		

3) 공 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당초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검암1 근린공원	검여 근린공원	근린공원	검암동 496	12,475.2	-	12,475.2	인고93-130 (`93.9.28)	
변경	8	검암8 어린이공원	삼지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504-1	2,070.3	-	2,070.3	인고93-130 (`93.9.28)	
변경	9	검암9 어린이공원	허암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534-3	2,977.8	-	2,977.8	인고93-130 (`93.9.28)	
기정	10	검암 근린공원	검암 근린공원	근린공원	검암동 533	743.6 (296,396)	-	743.6 (296,396)	건고66-2701 (`66.8.31)	()는 전체 면적
	계			4개소		18,266.9	-	18,266.9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검여 근린공원	공원 시설명 변경	◦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
8	삼지 어린이공원	공원 시설명 변경	◦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
9	허암 어린이공원	공원 시설명 변경	◦ 지역의 유래 및 지명을 고려하여 공원명 변경

4) 녹 지 :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검암2녹지	완충녹지	검암동 492-3	540.7	-	540.7	인고93-130 (`93.9.28)	
기정	3	검암3녹지	완충녹지	검암동 525-4, 525-9	647.4	-	647.4	인고93-130 (`93.9.28)	
기정	4	검암4녹지	완충녹지	검암동 524-1	3,223.3	-	3,223.3	인고93-130 (`93.9.28)	
	계		3개소		4,411.4	-	4,411.4		

5) 학 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초등학교	초등학교	검암동 495	10,395.3	-	10,395.3	인고93-130 (`93.9.28)	
기정	6	중 학 교	중 학 교	검암동 497	10,535.0	-	10,535.0	인고93-130 (`93.9.28)	
기정	7	초등학교	초등학교	검암동 536-1	11,791.0	-	11,791.0	인고93-130 (`93.9.28)	
	계		3개소		32,721.3	-	32,721.3		

6) 공 공 청 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	파출소	공공청사	검암동 514-7	649.5	-	649.5	인고93-130 (`93.9.28)	
	계		1개소		649.5	-	649.5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A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11	31,852.7	1	26,010.8	공동건축
		2	5,841.9	
30	32,089.3	1	15,740.7	
		2	16,348.6	
31	15,740.8	1	15,740.8	
37	31,485.8	1	15,743.1	
		2	15,742.7	

2) 근린생활시설용지

필지규모 600㎡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수 지정

(단,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규모가 300㎡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적(㎡)	
7	5,617.1	1	1,633.6	4
		2-1	1,322.9	2
		2-2	697.6	-
		3	842.8	2
		4	545.6	-
		5	574.6	-
25	4,389.9	1	350.5	-
		2	500.1	-
		3	2,921.7	6
		4	251.7	-
		5	365.9	-
26	3,705.7	1-1	2,661.7	5
		1-2	1,044.0	-
27	2,415.9	1	1,044.0	2
		2	1,371.9	3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28	2,375.0	1	494.9	-
		2-1	194.4	공동건축
		2-2	196.0	
		2-3	220.5	-
		2-4	221.2	-
		2-5	220.8	-
		3	209.1	-
		4	618.1	-
57	3,338.7	1	1,071.9	3
		2	274.8	-
		3	359.8	-
		4	424.4	-
		5	504.7	-
		6	703.1	-
58	2,983.7	1	313.2	공동건축
		2	113.7	
		3-1	220.8	-
		3-2	205.1	-
		3-3	447.2	-
		4	552.2	-
		5	580.8	-
		6	550.7	-
59	3,729.7	1	1,494.5	2
		2	724.6	-
		3	768.6	2
		4	345.3	-
		5	396.7	-
60	3,270.8	1	1,447.0	2
		2	653.0	-
		3	357.1	-
		4	257.2	-
		5	556.5	-
61	3,051.7	1	448.0	공동건축
		2	189.6	-
		3	144.1	공동건축
		4	239.4	-
		5	477.3	-
		6	250.1	-
		7	662.2	-
		8	641.0	-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68	3,738.0	1	121.9	-
		2	598.9	공동건축
		3	195.5	
		4	173.8	-
		5-1	556.6	-
		5-2	371.2	-
		5-3	348.6	-
		6	199.3	-
		7	527.6	-
		8	339.4	-
		9	305.2	-
69	614.4	4	614.4	-

3) 단독주택용지

필지규모 400㎡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가능선수 지정.

(단, 대지분할가능선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의 최소 규모가 200㎡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 단독주택용지(C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1	2,050.4	1	633.8	2
		2	1,416.6	4
2	3,158.4	1	289.7	-
		2	117.7	-
		3	196.3	-
		4	1,864.1	6
		5	428.1	2
		6	262.0	-
3	2,861.6	1	263.6	-
		2	294.5	-
		3	1,350.4	4
		4-1	345.6	-
		4-2	607.5	2
8	3,194.5	1-1	304.2	-
		1-2	300.0	-
		2	914.5	3
		3-1	265.3	-
		3-2	314.3	-
		3-3	403.2	2
		3-4	242.2	-
		3-5	354.1	-
		4	96.7	-
9	3,330.9	1	594.0	2
		2	211.9	-
		3	186.6	-
		4	191.6	-
		5	267.1	-
		6	267.5	-
		7	152.6	-
		8	843.3	4
		9	123.8	-
		11	270.3	-
		10	90.5	-
		12	131.7	-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10	1,754.2	1	326.5	－
		2	151.2	－
		3	193.3	－
		4	174.9	－
		5	174.9	－
		6	320.8	－
		7	412.6	2
18	2,816.5	1	797.8	3
		2	1,088.8	5
		3	223.7	－
		4	353.2	－
		5-1	176.7	－
		5-2	176.3	－
19	3,188.4	2	898.3	2
		3	273.5	－
		4	443.2	2
		5	814.9	3
		6	758.5	2
20	4,985.7	1	964.5	3
		2	552.8	2
		4	195.0	－
		5	659.3	2
		6	568.7	2
		7	589.7	2
		8	241.3	－
		9	363.0	－
		10	398.9	－
		11	452.5	2
21	3,737.8	1	1,960.3	5
		2	565.3	2
		3	404.7	－
		4	807.5	－
43	2,576.5	2	2,576.5	8
45	1,999.7	2	269.8	－
		3	1,158.4	5
		4	295.6	－
		5	275.9	－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46	5,522.2	1	723.1	3
		2	1,645.0	6
		3	263.2	-
		4	1,282.4	4
		5	1,608.5	6
47	2,995.8	1	438.1	2
		2	440.5	2
		3	434.6	2
		4	505.5	2
		5	646.3	2
		6	530.8	2
49	2,288.6	1	1,794.4	4
		2	494.2	2
51	4,478.8	1	266.0	-
		2	212.0	-
		3	452.9	2
		4	854.6	4
		5	295.6	-
		6	158.1	-
		7	102.3	-
		8	103.3	-
		9-1	291.7	-
		9-2	333.5	-
		9-3	196.5	-
		9-4	202.8	-
		9-5	214.0	-
		10	795.5	3
52	4,696.6	1	1,005.1	4
		2	206.9	-
		3	179.9	-
		4	92.5	-
		5	456.8	-
		6	804.1	3
		7	507.2	2
		8	200.6	-
		9	442.9	2
		10-1	248.5	-
		10-2	248.1	-
		10-3	304.0	-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53	4,410.8	1	387.6	-
		2	317.6	-
		3	577.3	2
		4	243.3	-
		5	236.0	-
		6	658.1	2
		7	313.4	-
		8	543.9	2
		9	386.0	-
		10	385.9	-
		11	361.7	-
54	4,122.2	1	622.3	2
		2	117.6	-
		3	321.9	-
		4	580.5	2
		5	502.7	2
		6-1	233.0	-
		6-2	233.3	-
		7	344.5	-
55	4,974.6	8	1,166.4	5
		1	1,193.1	3
		2	751.9	2
		3	171.0	-
		4	297.3	-
		5	251.2	-
		6	515.1	2
		7	246.9	-
		8	312.4	-
		9	140.3	-
		10	192.7	-
		11	407.6	2
56	4,518.4	12	495.1	2
		1	845.5	4
		2	140.9	-
		3	401.2	2
		4	265.8	-
		5	323.6	-
		6	203.8	-
		7	488.5	2
		8	220.2	-
		9	96.0	-
		10	166.1	-
		11	694.3	3
		12	457.9	2
		13	214.6	-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62	4,958.1	1	385.5	-
		2	364.0	-
		3-1	594.9	2
		3-2	1,169.7	3
		4	539.3	2
		5	618.3	2
		6	288.5	-
		7	997.9	4
63	3,741.5	1	1,218.5	6
		2	783.0	2
		3	198.2	-
		4	490.7	2
		5	404.9	2
		6	646.2	3
64	4,219.0	1	623.9	2
		2-1	250.5	-
		2-2	250.9	-
		2-3	251.0	-
		2-4	251.0	-
		3	248.7	-
		4	147.6	-
		5	802.4	3
		6	147.5	-
		7-1	369.8	-
		7-2	363.7	-
		8	512.0	2
65	4,997.5	1	1,034.5	4
		2	774.2	2
		3	149.7	-
		4	460.5	2
		5	542.5	2
		6	978.4	4
		7	215.7	-
		8	310.7	-
		9	531.3	2

가구 번호	기 정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치	면 적(㎡)	
66	5,293.5	1	1,027.9	4
		2-1	238.1	-
		2-2	238.0	-
		2-3	237.3	-
		2-4	237.2	-
		2-5	237.1	-
		3	964.7	4
		5	176.0	-
		6	310.8	-
		7	143.8	-
		8	387.1	-
		9	298.6	-
		10	796.9	3
67	6,150.9	1	334.8	-
		2	384.1	-
		3	260.6	-
			238.1	-
			238.2	-
			238.2	-
		5	433.8	2
		6	138.9	-
		7	198.2	-
		8	352.3	-
		9	449.1	2
		10	721.5	3
		11	581.6	-
		12	186.1	-
		13	1,395.4	6
69	1,940.6	1	229.7	-
		2	335.1	-
		3	754.9	3
		5	214.7	-
		6	143.6	-
		7	262.6	-
70	2,953.2	1	926.1	4
		2	335.8	-
		3	671.7	2
		4	679.5	3
		5	340.1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A용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11,30,31,37	11,30,31,37 (공동주택지 A용도)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A 지정 및 권장용도	◦ 변경없음
			불허용도	◦ 별표1의 A 불허용도	
		건 폐 율	◦ 20%이하		◦ 변경없음
		용 적 률	◦ 250%이하		◦ 변경없음
		높 이	◦ 19층이하		◦ 변경없음
		형 태	◦ 별표2의 A		◦ 변경없음
		배 치	◦ 별표3의 A		◦ 변경없음
		색 채	◦ 별표4의 A		◦ 변경없음
		건 축 선	◦ 별표3의 A		◦ 변경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7,25,26,27,28,57,58,59,60,61,68(1~9),69(4)	7,25,26,27,28,57,58,59,60,61,68(1~9),69(4) (근린생활시설용지 B용도)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B 지정 및 권 장용도	◦ 변경없음
			불허용도	◦ 별표1의 B 불허용도	
		건 폐 율	◦ 50%이하		◦ 변경없음
		용 적 률	◦ 200%이하		◦ 변경없음
		높 이	◦ 4층이하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 산정에 제외한다.단, 건축물의 용도전체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함)		◦ 변경없음
		형 태	◦ 별표2의 B		◦ 변경없음
		배 치	◦ 별표3의 B		◦ 변경없음
		색 채	◦ 별표4의 B		◦ 변경없음
		건 축 선	◦ 별표3의 B		◦ 변경없음

3)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C1용도) 결정 조서 : 변경(8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1(1~2),2(1~6),3(1~3,4-1~2),8(1-1~2,2,3-1~5,4),9(1,8~12),10(2~4),19(4~6),20(1~2,4~11),21(3~4),43(2),45(3~5),46(1~5),47(2~5),51(1~8,9-1~5),52(2~9,10-1~3),53(7~11),54(2~3,6-1~2,7),55(2~9),56(1~10,12~13),62(1~2,3-1~2,6),63(2~6),64(1,2-1~4,3~6,7-1~2,8),65(6~9),66(2-1~2,3,5~6),67(1~3,4-1~3,5~12),69(1,2~3,5~7),70(2~5)	1(1~2),2(1~6),3(1~3,4-1~2),8(1-1~2,2,3-1~5,4),9(1,8~12),10(2~4),19(4~6),20(1~2,4~11),21(3~4),43(2),45(3~5),46(1~5),47(2~5),51(1~8,9-1~5),52(2~9,10-1~3),53(7~11),54(2~3,6-1~2,7),55(2~9),56(1~10,12~13),62(1~2,3-1~2,6),63(2~6),64(1,2-1~4,3~6,7-1~2,8),65(6~9),66(2-1~2,3,5~6),67(1~3,4-1~3,5~12),69(1,2~3,5~7),70(2~5) 단독주택용지 C1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C 지정 및 권장용도	◦ 별표1의 C1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C 불허용도	◦ 별표1의 C1 불허용도
		건 폐 율	◦ 50%이하	◦ 변경없음
		용 적 륜	◦ 150%이하	◦ 변경없음
		높 이	◦ 3층이하	◦ 변경없음
		형 태	◦ 별표2의 C	◦ 별표2의 C1
		배 치	◦ 별표3의 C	◦ 별표3의 C1
		색 채	◦ 별표4의 C	◦ 변경없음
		건 축 선	-	-

■ 단독주택용지(C2용도) 결정 조서 : 변경(10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9(2~8),10(1,5~7),18(2~4,5-1~2),43(2),49(1~2),45(2),47(1,6),51(10),52(1),53(1~6),54(1,4~5,8),55(1,10~12),56(11),62(4~5,7),63(1),65(1~6),66(1,2-3~5,7~10),67(13),70(1)	9(2~8),10(1,5~7),18(2~4,5-1~2),43(2),49(1~2),45(2),47(1,6),51(10),52(1),53(1~6),54(1,4~5,8),55(1,10~12),56(11),62(4~5,7),63(1),65(1~6),66(1,2-3~5,7~10),67(13),70(1) 단독주택용지 C2	용도	권장 용도	별표1의 C 지정 및 권장용도	별표1의 C2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 용도	별표1의 C 불허용도	별표1의 C2 불허용도
		건 폐 율		50%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150%이하	변경없음
		높 이		3층이하	변경없음
		형 태		별표2의 C	별표2의 C2
		배 치		별표3의 C	별표3의 C2
		색 채		별표4의 C	변경없음
		건 축 선		-	-

■ 단독주택용지(C3용도) 결정 조서 : 변경(12m도로에 접하는 획지에 한함)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18(1), 19(2~3),21(1~2), 43(2)	18(1), 19(2~3),21(1~2), 43(2) 단독주택용지 C3	용도	권장용도	◦ 별표1의 C 지정 및 권장용도	◦ 별표1의 C3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C 불허용 도	◦ 별표1의 C3 불허 용도
		건 폐 율		◦ 50%이하	◦ 변경없음
		용 적 률		◦ 150%이하	◦ 변경없음
		높 이		◦ 3층이하	◦ 변경없음
		형 태		◦ 별표2의 C	◦ 별표2의 C3
		배 치		◦ 별표3의 C	◦ 별표3의 C3
		색 채		◦ 별표4의 C	◦ 변경없음
		건 축 선		-	-

4) 교육시설용지

■ 교육시설용지(D용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4,6,45(1)	4,6,45(1) (교육시설용지D 용도)	용 도	◦ 학교	◦ 변경없음
		건 폐 율	◦ 30%이하	◦ 변경없음
		용 적 률	◦ 150%이하	◦ 변경없음
		높 이	◦ 5층이하	◦ 변경없음
		형 태	-	◦ 변경없음
		배 치	-	◦ 변경없음
		색 채	-	◦ 변경없음
		건 축 선	-	◦ 변경없음

5) 공공청사용지

■ 공공청사용지(E용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57(7)	57(7) (공공청사용지E 용도)	용 도	◦ 공공청사	◦ 변경없음
		건 폐 율	◦ 50%이하	◦ 변경없음
		용 적 률	◦ 200%이하	◦ 변경없음
		높 이	◦ 4층이하	◦ 변경없음
		형 태	-	◦ 변경없음
		배 치	-	◦ 변경없음
		색 채	-	◦ 변경없음
		건 축 선	-	◦ 변경없음

6) 주차장용지

■ 주차장용지(F용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10(8),43(1)	10(8),43(1) (주차장용지F용도)	용 도	◦ 주차장	◦ 변경없음
		건 폐 율	-	-
		용 적 른	-	-
		높 이	◦ 지평식	◦ 변경없음
		형 태	-	-
		배 치	-	-
		색 채	-	-
		건 축 선	◦ 별표3의 C	◦ 변경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별표 1] : 건축물 용도 분류표 : 변경

[별표 2] : 건축물 형태 분류표 : 변경

[별표 3] : 건축물 배치 분류표 : 변경

[별표 4] :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 변경 없음

[별표 5] : 차량동선·주차시설·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 : 변경

[별표 6] :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별표 7]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 변경 없음

[별표 8] : 기타사항 : 변경 없음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기정)

구분	A	B	C	D	E	F
지정용도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 학교	◦ 공공청사	◦ 주차장
권장용도	-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다중 및 확장장치 없는 것에 한함)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 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단,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시에 한함)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단,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1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시에 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					

주1) 단독주택지(C)의 경우 경사지붕내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를 1.5m초과 1.8m이하로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는 다락층을 포함하여 4층이하, 용적을 180% 이하로 완화

주2)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 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건축물 용도 분류표 (변경)

구분	A	B	C1	C2	C3	D ~ F
지정 용도	-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	-	변경없음
권장 용도	-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 집회장 (타종 및 학생장차 없는 것에 한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 부동산 중개업소 -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 아동복지시설 · 유치원)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과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 부동산 중개업소 -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 아동복지시설 · 유치원) -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박물관 · 미술관 · 기념관, 12m이상도로에 12m 접함)	변경없음
불허 용도	- 지정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소매점 -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용도					

- 주1) 단독주택지(C)의 경우 경사지붕내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를 1.5m초과 1.8m이하로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는 다락층을 포함하여 4층이하, 용적을 180% 이하로 완화
- 주2)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 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 주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가구 및 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
- 주4)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다른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주5) 가설건축물 제한(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
- 주6) 권장용도(C1,C2,C3)는 도로폭원에 따라 완하하고 있으나 도로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하는 획지)에 대해서는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 주7) 획지분할시 전면이 기준에 접한 도로 폭보다 적은 도로에 접할 경우, 좁은 도로변의 용도 적용

[별표 2]

건축물 형태 분류표 (기정)

용 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형 태
공동주택용지 (A)	-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 ㄴ”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근린생활시설용지 (B)	-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옥상의 이용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 ◦ 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단독주택용지 (C)	-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 ◦ 옥상의 이용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 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 ◦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건축물 형태 분류표 (변경)

용 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형 태
공동주택 용지 (A)	-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ㄴ”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근린생활 시설 용지 (B)	-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옥상의 이용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 ◦ 근린생활시설의 1층 서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 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단독주택 용지 (C1,C2, C3)	-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단, 다른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 ◦ 옥상의 이용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 ◦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신설)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0m로 제한 ◦ 검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 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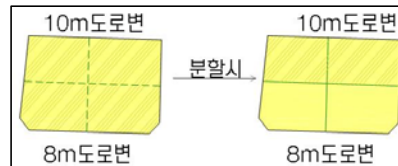
[별표 3]

건축물 배치 분류표 (기정)

용도	도면표시	건축물의 배치
공동주택 용지 (A)	-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 종로 2-169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 담장 설치 : 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 설치 -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높이 1.2m 이하) 설치를 권장 - 공원 및 녹지시설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담장(높이 1m이하) 설치 - 동일 블록 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여 ◦ 담장설치불허구간 : -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담장을 없애고 같은 동네로서의 공간형성) - 건축한계선 지정 구역(담장 설치를 불허하여 일반인의 활용 유도) ◦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가급적 한가지로 통일토록 권장
민간생물 시설 용지 (B)	-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 종로 2-169호선, 종로 2-171호선, 종로 2-172호선, 종로 3-145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0.6m이하의 식수대, 높이 1.0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 - 간선가로변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건물 주택 용지 (C)	-	◦ 종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2m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 ◦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건축물 배치 분류표 (변경)

용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배 치
공동주택 용지 (A)	-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 중로 2-169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 담장 설치 : 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 설치 -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높이 1.2m 이하) 설치를 권장 - 공원 및 녹지시설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담장(높이 1m이하) 설치 - 동일 블록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여 - 담장설치불허구간 : -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담장을 없애고 같은 동네로서의 공간형성) - 건축한계선 지정 구역(담장 설치를 불허하여 일반인의 활용 유도) -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가급적 한가지로 통일토록 권장
근린생활 시설 용지 (B)	-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 중로 2-169호선, 중로 2-171호선, 중로 2-172호선, 중로 3-145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0.6m이하의 식수대, 높이 1.0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 - 간선가로변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단독주택 용지 (C1, C2, C3)	-	- 중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2m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 -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 획지분할에 관한 사항 - 전면이 8m 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1적용 - 전면이 10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2적용 - 전면이 12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3적용 - 권장용도에 관한 사항 - 도로 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한 획지에 대한 기준은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별표 5]

차량동선.주차시설.단지내시설물에 관한 계획 (기정)**기 타 사 항****■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 간선 및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1) 차량출입불허구간

- 종로 2-169호선변의 주차통로를 제외한 구간
-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30m이내의 구간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10m이내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2) 주차통로

- 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에서의 진출입을 가능한 억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획지1개소당 1개소의 주차통로 설치를 유도하며 1개소당 통로폭은 최소3m이상 확보
(단,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선정)

◦ 주차에 관한 계획

-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동진출입 유도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유도
- 근린생활 용지내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1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권장

■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 기본방향

- 보행활동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
-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차량동선, 주차시설, 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 (변경)

기 타 사 항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 간선 및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1) 차량출입불허구간

- 종로 2-169호선변의 주차통로를 제외한 구간
-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30m이내의 구간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10m이내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2) 주차통로

- 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에서의 진출입을 가능한 억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획지1개소당 1개소의 주차통로 설치를 유도하며 1개소당 통로폭은 최소3m이상 확보
(단,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선정)

◦ 주차에 관한 계획

-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동진출입 유도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유도
- 근린생활 용지내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1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권장

■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 기본방향

- 보행활동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
-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별표 6]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용 도	도면 표시	도 시 계 획 도 로	
도시 계획 도로	-	가 로 시설물	◦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토록 유도 ◦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복합적 기능을 갖도록 설치 ◦ 시설간에 통일성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하여 가로를 장식할 수 있도록 설치
		식 재	◦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별, 가로망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 인천시의 시목인 목백합 또는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 가로수는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떨어져 식재하며, 식재간격은 6~8m를 기준으로 함
		포 장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 보 도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 포장구획을 소단위로하여 친근감 유지 - 재료는 소형고압블럭 및 일반콘크리트블럭 등의 재료 사용 유도 ◦ 연 석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조 명 시 설	◦ 가로등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조절 - 조명등의 설치타입은 주변여건에 적합되도록 선택 ◦ 보행등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
		기 타 사 항	◦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별표 7]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변경 없음)

-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별표 8]

기 타 사 항 (변경 없음)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1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성 명 : 태양렉카(주) 외 247인

주소거소 : 별첨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08. 12. 12 ~ 2008. 12. 26 (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고지서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2. 2008.12.26한 우리구 교통민원과 (☎032-560-4874, FAX032-560-4869)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3.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지동차의무보합과테로부과반송분공시송달내역서

연번	부과번호	차량번호	납부자명	우편번호	주소	사유	비고
1	035374	인천9881474	태인빌(주)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번지 583호	수취인불명	11월과타로누과
2	036875	인천7212456	김용만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13번지 14호 38동 4반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3	036156	01무3706	채경준	404-26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동 2반 201호	주소불명	11월과타로누과
4	035557	02나2609	최상호	157-22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381번지 1호 13동 1반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5	035334	02마2647	김태형	404-310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820번지 1호 20동 8반 태종아파트 107동 1501호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6	035695	03나19031	김철오	404-240	인천광역시 서구 신철동 135번지 3호 17동 2반 보성빌라 3동 103호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7	035503	03누8075	이영민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6번지 17호 33동 4반 중앙빌라 B동 801호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8	035697	03수6726	정진우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09번지 55호 10동 1반 태형아파트 102동 402호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9	036165	04가16980	김유성	404-190	인천광역시 서구 삼각동 253번지 13호 18동 4반 웰리스타운 106동 402호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10	035409	04라4557	송국현 외 1인(송용주)(채권면제)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4번지22호13/4 2동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11	036167	04마2227	고인주	404-190	인천광역시 서구 삼각동 344번지 11호 17동 1반 동보빌라 3동 601호	수취인불명	11월과타로누과
12	035701	05라3003	이세수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90번지 17호 23동 5반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13	036174	05마1485	김계남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번지 12호 9동 3반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14	035405	05오3762	김영택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55번지 14호 1동 1반 가재빌라 서동 101호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15	035709	06보5551	방영학	404-240	인천광역시 서구 신철동 143번지 24호 13동 1반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16	036176	06마8341	김상근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43번지 203호 4동 2반 대한빌라 2동 201호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17	036179	07다1141	최은희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2번지 2호 5동 1반 현대3차아파트 301동 703호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18	035506	07다8264	박동주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48번지 1호 12동 4반 보금빌라 301호	이사불명	11월과타로누과
19	036464	07모7614	김주현 외 1인(유재근)	429-45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2번지 7호 19동 3반 305호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20	036181	07부7038	최종신	404-19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97번지 5호 10동 3반	주소불명	11월과타로누과
21	035346	07아9753	노순진	404-19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41번지 18호 52동 3반 연희마을편선 3동 401호	수취인불명	11월과타로누과
22	035722	07우1268	김인혜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9번지 18호 30동 4반 중앙빌라 5동 102호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23	036468	08고9485	하재훈	404-310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7동 2반 신안실크렐리아파트 502동 1507호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24	036183	08누6766	서민석	404-17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동 2반 204호	주소불명	11월과타로누과
25	035726	08마5378	하유리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용길동 648번지 8호 48동 4반 블루문마을 303호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26	036187	08마6556	박종상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 21번지 21호 27동 8반 대우시원아파트 105동 507호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27	036471	08마6760	정경민(채권면제)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341번지 14호 28/3 하니아파트 201동 1407호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28	035662	08지6752	손대성	404-280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7번지 1호 20동 1반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29	036473	09구3824	박동한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2번지 14호 38동 1반 504호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30	036476	09도9051	나형순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74번지 14호 18동 1반 동진아파트 가동 301호	이사불명	11월과타로누과
31	035637	09도9817	한상복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5번지 1호 38동 5반 중앙빌라 나동 202호	폐문부재	11월과타로누과

32	035737	09서8943	이덕순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88번지 58호 30동 5반 세종빌라 니동 8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88번지 58호 30동 5반 세종빌라 니동 802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33	035461	10니7688	김용훈(공채면제)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22번지 33호 46/4 한곡빌라 106동 1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22번지 33호 46/4 한곡빌라 106동 1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34	035742	10니5150	박복순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89번지 8호 9동 2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89번지 8호 9동 2반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35	035200	10로6084	이해선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2번지 7동 4반 금호아울름아파트 201동 24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2번지 7동 4반 금호아울름아파트 201동 24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36	035204	10루1533	ICHKHOOL LOO LHMG-VAD09J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번지 2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번지 205호	수취인불명	11월과태료부과
37	035748	10조3826	서명현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84번지 33호 14동 4반 개나리아파트 5동 5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84번지 33호 14동 4반 개나리아파트 5동 507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38	035366	14비7289	장경희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번지 5호 17동 3반 롯데우림아파트 2동 1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번지 5호 17동 3반 롯데우림아파트 2동 105호	이시불명	11월과태료부과
39	035509	15로7373	김진민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3번지 9동 3반 상명빌라 비동 3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3번지 9동 3반 상명빌라 비동 302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40	035751	16로7718	장진석	407-05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52번지 28/4 계산하이베라스 오비스텔 8동 80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52번지 28/4 계산하이베라스 오비스텔 8동 8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41	035758	17타4344	정지은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08번지 1호 3동 7반 동남아파트 4동 3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08번지 1호 3동 7반 동남아파트 4동 310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42	035208	19우7350	이여주	404-160	인천광역시 서구 감람동 623번지 12호 5동 3반 동진빌라 5동 3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감람동 623번지 12호 5동 3반 동진빌라 5동 302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43	035212	19우7469	강영우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0번지 9호 28동 3반 한빛빌라 2 4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0번지 9호 28동 3반 한빛빌라 2 402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44	035572	217가7508	이준영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10번지 24호 38동 2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10번지 24호 38동 2반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45	035216	22가7789	박송석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75번지 63호 10동 5반 한올아트빌 103동 1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75번지 63호 10동 5반 한올아트빌 103동 1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46	035492	22고8233	강현수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60번지 31호 23동 5반 세림빌라 5동 3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60번지 31호 23동 5반 세림빌라 5동 302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47	035410	23무6824	성안산업(주)	404-17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488번지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488번지28호	수취인불명	11월과태료부과
48	035761	25고1036	(주)한빛테크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번지 270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번지 270호	수취인불명	11월과태료부과
49	035764	25구1688	고희정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1번지 13호 19동 4반 하나아파트 14동 4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1번지 13호 19동 4반 하나아파트 14동 407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50	035493	25니2875	이원주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4번지 1호 21동 8반 수경아파트 1동 5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4번지 1호 21동 8반 수경아파트 1동 5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51	035219	25니2949	정현구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69번지 4호 33동 1반 힐튼빌라 비동 3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69번지 4호 33동 1반 힐튼빌라 비동 302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52	035495	26너4235	백민철	404-260	인천광역시 서구 미전동 684번지 11호 5동 1반 리더스빌 4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미전동 684번지 11호 5동 1반 리더스빌 416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53	035412	26누2003	불량근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9번지 13호 9동 1반 중앙아파트 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9번지 13호 9동 1반 중앙아파트 106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54	035220	26타2176	이상기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2번지 8호 28동 4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2번지 8호 28동 4반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55	035231	27타1855	민환기(공채면제)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4번지 51호 31/2 1동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4번지 51호 31/2 1동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56	035501	27무2445	한은동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7번지 98호 24동 5반 대진빌라 니동 1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7번지 98호 24동 5반 대진빌라 니동 102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57	035775	27타1557	ABRAME ALI J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1번지 1호 대원주역 가동 2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1번지 1호 대원주역 가동 204호	수취인불명	11월과태료부과
58	035234	27타4641	채인숙,전우진	404-270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2번지 2호 11/4 신명아파트 107동 1204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2번지 2호 11/4 신명아파트 107동 1204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59	035778	27타7582	이미선	404-24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04번지 82호 28동 3반 잉메빌라 다동 4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04번지 82호 28동 3반 잉메빌라 다동 4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60	035763	28타1884	서은숙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5번지 23호 1동 3반 2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5번지 23호 1동 3반 2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61	035336	28라2548	니론형외나만오(공채면제)	404-270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24번지 9호 20/3 벽두아파트 1309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24번지 9호 20/3 벽두아파트 1309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62	035766	28라3625	최문기	402-200	인천광역시 남구 추안동 478번지 35호 3동 5반 중앙한신아파트 501호	인천광역시 남구 추안동 478번지 35호 3동 5반 중앙한신아파트 5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63	035239	28무2510	박창근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9번지 2호 14동 3반 미리내빌라 1동 8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9번지 2호 14동 3반 미리내빌라 1동 8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64	035241	28타1827	김복경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52번지 17호 23동 3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52번지 17호 23동 3반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65	035768	28타7789	이희순(공채면제)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68번지 2/4 한도아파트 201동 403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68번지 2/4 한도아파트 201동 403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66	03643	31년7962	이옥산	404-330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1동 2번 브니엘상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1동 2번 브니엘상가	수취인불명	11월과달로부과
67	03649	31년7101	정미자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12동 5번 주영아파트 118동 504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12동 5번 주영아파트 118동 504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68	03657	32년1926	박미란 외1인(이인호)*공제면제	404-270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2번지 2호 10/5 신영아파트 103동 1203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2번지 2호 10/5 신영아파트 103동 1203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69	03673	32년6101	이상규	404-24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12번지 48호 31동 2번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12번지 48호 31동 2번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70	03623	32년6210	인선주	404-270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23동 1번 불로금호아울림 101동 403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23동 1번 불로금호아울림 101동 403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71	03625	32년6343	두병복	404-160	인천광역시 서구 경인동 512번지 2호 20동 6번 중림아파트3차아파트 406동 5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인동 512번지 2호 20동 6번 중림아파트3차아파트 406동 502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72	03633	36년6804	황은수	420-130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도당동 247번지 88호 신세기출판 102동 801호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도당동 247번지 88호 신세기출판 102동 801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73	03676	37년9418	변광우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17번지 37동 6번 신원대아파트 703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17번지 37동 6번 신원대아파트 703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74	03640	37년16146	영광호	406-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6번지 금호아파트 103동 10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6번지 금호아파트 103동 101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75	03624	38년19428	노창만(공제면제)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8번지 4호 21/1 성형업빌 라동 1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8번지 4호 21/1 성형업빌 라동 102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76	03658	38년6863	이미란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83번지 8동 6번 한신아파트 115동 2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83번지 8동 6번 한신아파트 115동 202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77	03626	38년8915	이재승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9번지 32동 4번 태신아파트 3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9번지 32동 4번 태신아파트 306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78	03658	38년2062	정완근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36번지 9호 11동 3번 2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36번지 9호 11동 3번 201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79	03680	39년4236	손미경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2번지 3호 18동 8번 보광아파트 101동 8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2번지 3호 18동 8번 보광아파트 101동 808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80	03681	39년4378	한복영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3번지 68호 6동 5번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3번지 68호 6동 5번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81	03621	41년6863	김현철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1번지 92호 4동 5번 문성하이츠타운 19동 4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1번지 92호 4동 5번 문성하이츠타운 19동 405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82	03639	41년7249	전민호외1인(전세호)*공제면제*	404-17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27번지 1호 24/2 가이오상베르2차아파트 202동 3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27번지 1호 24/2 가이오상베르2차아파트 202동 301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83	03683	41년7647	이영니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3번지 21동 1번 경남아너스빌아파트 101동 17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3번지 21동 1번 경남아너스빌아파트 101동 1702호	수취인불명	11월과달로부과
84	03647	41년4203	김동민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63번지 48호 6동 4번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63번지 48호 6동 4번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85	03605	41년3218	송정원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14번지 76호 27동 5번 창대빌라 10동 3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14번지 76호 27동 5번 창대빌라 10동 301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86	03609	42년6009	김용대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6번지 6호 19동 3번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6번지 6호 19동 3번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87	03662	45년2579	강창진	404-26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3동 1번 11동 303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3동 1번 11동 303호	이시불명	11월과달로부과
88	03626	45년6207	김용범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용정동 55동 3번 건원-민원세상아파트 114동 4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용정동 55동 3번 건원-민원세상아파트 114동 404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89	03627	45년5964	노성호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33번지 16동 1번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33번지 16동 1번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90	03630	46년1039	이학용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8번지 5호 17동 1번 용영그린빌라 102동 4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8번지 5호 17동 1번 용영그린빌라 102동 401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91	03682	46년7128	김현숙	404-330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65번지 3호 18동 1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65번지 3호 18동 1번	이시불명	11월과달로부과
92	03639	47년6906	한명숙외정재현	404-200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18번지 1호 46/3 광영아파트 103동 15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18번지 1호 46/3 광영아파트 103동 1501호	수취인불명	11월과달로부과
93	03634	48년2157	심분숙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3번지 202호 4동 3번 대한빌라 7동 3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3번지 202호 4동 3번 대한빌라 7동 302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94	03636	48년2373	전미현	404-320	인천광역시 서구 현암동 567번지 12동 5번 대한항공사원대아파트 111동 501호	인천광역시 서구 현암동 567번지 12동 5번 대한항공사원대아파트 111동 501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95	03627	48년2844	정기철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4번지 26호 18동 5번 대명인빌 라동 203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4번지 26호 18동 5번 대명인빌 라동 203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96	03688	48년4008	김영순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34번지 27호 16동 5번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34번지 27호 16동 5번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97	036370	48년4244	문종일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0번지 4호 34동 4번 용허빌라 나동 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0번지 4호 34동 4번 용허빌라 나동 82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98	036277	48년4262	AL SAEINCH AHMAD MOHAMAD ABO E	404-17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27번지 1호 가이오상베르2차아파트 201-50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27번지 1호 가이오상베르2차아파트 201-501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99	036278	48년4313	김진수	404-26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67번지 6동 4번 동아아파트 104동 904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67번지 6동 4번 동아아파트 104동 904호	폐문부재	11월과달로부과

100	036557	48보4940	이경운	404-19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7번지 11호 50동 2반 인심파크빌 A동 801호	수취인불명	11월과다로부과
101	036545	52노3394	이상준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7번지 62호 24동 5반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02	036285	52노3578	(주)청민산업	404-280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49번지 9호	이시불명	11월과다로부과
103	036226	52오7289	정필도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97번지 2호 27동 3반 101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04	036418	54부5547	김한길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8번지 28호 30동 4반 신들먼션 112동 383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05	036339	55차1596	나원복외1인(유경우)	404-320	인천광역시 서구 원영동 대한항공사원임대아파트 105동 703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06	036297	56특6127	이근복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09번지 20호 35동 2반 황심빌라 13동 202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07	036973	57부6878	황보경	404-310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310번지 2동 1반 한미빌라 A동 201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08	036974	57부6894	관학만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79번지 4호 5동 1반	주소불명	11월과다로부과
109	036541	58부5421	강신규	407-3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63번지 31호 9동 3반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10	036300	58부5808	안경만외1인(고광범)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4번지 1호 21/6 석남수정 1동 505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11	036303	62리5080	권태정	404-270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72번지 15동 4반 콘스타운 김촌아파트 307동 402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12	036979	62리1070	변순자의 오덕남(채권면제)	404-24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73번지 18호 19동 3반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13	036980	64특3267	류경득	404-270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6번지 1호 12동 1반 콘스타운 동성아파트 201동 1701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14	036458	68리5907	이상진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7번지 10호 32동 1반 대덕빌라 D동 201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15	036982	73구8750	김도영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번지 19호 30동 5반 공작아파트 11동 609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16	036566	73오1693	김문수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12번지 38동 1반 성일연립 2동 305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17	036984	73보3115	최동수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2번지 8동 4반 금호어울림아파트 103동 1102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18	036987	73부3461	이병양	407-04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23번지 16호 20동 7반 세사미아파트 7동 401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19	036991	73오1761	박숙희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92번지 76호 15동 1반 한광빌라 라동 301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20	036982	73오3331	손연세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8번지 2동 1반 한곡아파트 201동 701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21	036341	73부5470	이철승	402-010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285번지 57호 대광빌라 4동 301호	수취인불명	11월과다로부과
122	036972	73부7055	주사랑 재일교회	404-28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 28번지 21호 2/1	주소불명	11월과다로부과
123	036902	77노2429	황윤지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2번지 2호 11동 3반 신명아파트 106동 1803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24	036599	80노1284	최종성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14번지 38동 1반 영성빌라 C동 103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25	036907	86노3278	(주)한별타크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번지 270호	수취인불명	11월과다로부과
126	036910	86노6045	이종관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2번지 8호 18동 3반 중인빌라 8동 301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27	036912	86노8618	김문석(채권면제)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1번지 5호 28/2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28	036913	86노2419	소순봉	404-270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79번지 5동 3반 동부아파트 108동 1502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29	036918	86노5060	박진수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03번지 33호 32동 2반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30	036576	86노5166	이교숙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1번지 10호 22동 1반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31	036920	86노5556	진영환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0번지 10호 2동 2반 삼보빌라 801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32	036358	86리1008	(주)금영철시스템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번지 573호	수취인불명	11월과다로부과
133	036926	86리5749	정대선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8번지 3호 30동 8반 신명아파트 102동 410호	폐문부재	11월과다로부과

134	035470	86리7149	최성훈	404-24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73번지 19호 19동 3반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35	035929	86부8120	안영준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11번지 85호 16동 6반 2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36	035471	86부2214	유현숙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7번지 1호 24동 1반	주소불명	11월과태료부과
137	036661	86서3930	강신규	407-3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63번지 31호 9동 3반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38	036336	86서3976	문재공	404-280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11번지 19동 1반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39	035398	86서5128	김용태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동 534번지 31호 16동 6반 청송빌라 니동 8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40	036338	86서5446	박용환	404-24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5번지 13호 21동 1반 2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41	036339	86서6334	김동균	404-270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28동 8반 불로금호어울림 108동 1003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42	036694	86서6662	한만규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동 522번지 16호 46동 2반 1층동 101호	수취인불명	11월과태료부과
143	036941	86서8409	김경옥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51번지 14호 3동 1반 정미빌라 302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44	036669	86서9332	(주)인제스틸	404-330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09번지 2호	이시불명	11월과태료부과
145	035946	86소1405	심재화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3번지 23호 10동 1반 로얄빌라 4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46	036351	86오1362	이경미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8번지 4호 21동 1반 신헌안빌 다동 2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47	036347	86주1679	김영돈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동 290번지 88호 3동 7반 세화빌라 4동 102호	수취인불명	11월과태료부과
148	036697	86주4039	박기훈	417-905	인천광역시 강화읍 남산리 474번지 2호 남산아파트 4동 301호	이시불명	11월과태료부과
149	036957	86주7725	홍석진	423-060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682번지 2동 8반 고층주공아파트 104동 151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50	036959	87기5363	양봉성	404-330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189번지 3호 18동 3반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51	036989	87기8175	김부영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1번지 38동 4반 가좌한신휴플러스아파트 216동 502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52	036803	87기8275	김영준	404-28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동 1반	주소불명	11월과태료부과
153	035546	87기8170	(주)신동특수자동차(상품용)	404-17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49번지 130호	이시불명	11월과태료부과
154	036602	91기3126	문성현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47번지 30호 11동 4반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55	036978	91기3816	김화성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09번지 55호 9동 2반 대화아파트 1동 809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56	036982	91기8146	안명운	404-200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3번지 3호 2동 3반 미도빌라 6동 802호	수취인불명	11월과태료부과
157	036362	91리4049	김영진	404-24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49번지 1호 15동 4반 고려아파트빌라 2동 8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58	036810	91대1195	최승화	404-24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1번지 18호 4동 2반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59	036605	91우2622	김애란	404-180	인천광역시 서구 삼곡동 242번지 7호 7동 4반 제스트빌 81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60	036613	92기3564	김순자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48번지 27호 12동 2반 2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61	036616	92기8335	문재춘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82번지 11호 6동 2반 지연어울림 8동 105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62	036673	93부1832	이수하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8번지 56호 12동 4반 한일빌라 3동 802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63	036618	94구6802	이호근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동 341번지 13호 19동 2반 하나아파트 12동 300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64	036363	인천1노7251	신인목재(주) T.576-8001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번지 63호	수취인불명	11월과대료부과
165	036367	인천28마2395	서호석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8번지 3호 30동 1번 신명아파트 101동 403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66	036371	인천2마5637	홍철현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4번지 12호 14동 3번 청실빌라 비동 201호	주소불명	11월과대료부과
167	036622	인천30고2437	한상길 T.517-1197	404-310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89블럭3-14동 30/2 동문고양빌아파트 602동 1503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68	036373	인천30고4184	이재호외박해경(공제면제)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산 17번지 9호 현영아파트 가동403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69	036477	인천30나1243	신범재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4번지 4호 35동 1번 화원빌라 니동 102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70	036397	인천30나2951	조한미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11번지 95호 8동 3번 대성빌라 라니동 201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71	036606	인천30누2728	태영산기(주)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75번지 8호	수취인불명	11월과대료부과
172	036609	인천30마5951	홍영배외1인홍기철(공제면제)	404-24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04번지 98호 37/1 명진아파트 501호	이사불명	11월과대료부과
173	036610	인천30리9368	김운자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00번지 71호 3동 6번 한빛아파트 3동 501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74	036393	인천30루7459	최원식 T.576-4931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81번지 53호 범양아파트 104/905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75	036377	인천30문5968	고종원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44번지 4호 11동 1번 흥해아파트 가동 309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76	036481	인천31가9146	마행복	404-24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17번지 3호 31동 5번 대원리드빌 A동 502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77	036630	인천31고7390	최병찬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75번지 8동 1번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78	036392	인천31구1704	김광준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7번지 18호 24동 3번 주진바이오펜 201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79	036385	인천31구7143	김성열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76번지 9동 5번 가좌주빌 803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80	036463	인천31나2052	유범원 T.762-6210	404-280	인천광역시 서구 마천동 639번지 21/5 영남탑스빌아파트 109동 2101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81	036631	인천31라2497	(주)고려그린 T.576-0551	404-17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488번지 7호	수취인불명	11월과대료부과
182	036420	인천31문3914	구경석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4번지 28호 31동 3번 석남빌라 2동 500호	주소불명	11월과대료부과
183	036634	인천31마3410	고춘식	404-310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7동 3번 신안실크밸리아파트 603동 1402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84	036006	인천32가8954	팽성자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1동 5번 주경아파트 113동 202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85	036680	인천32고4040	정관식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8번지 1호 15동 5번 예원빌라 니동 B01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86	036387	인천32다1854	우시열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4번지 12호 38동 1번 호진빌라 202동 401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87	036642	인천32마2520	임원범	415-871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406번지	수취인불명	11월과대료부과
188	036643	인천33노2715	김재환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3번지 1호 35동 4번 전인빌라 103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89	036009	인천33마9573	홍문아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2번지 7동 3번 금호아울림아파트 109동 2003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90	036646	인천33도1846	김남업	140-8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포구동 258번지 15호	수취인불명	11월과대료부과
191	036647	인천33도0762	김평수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7번지 18호 24동 3번 주진빌라 402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192	035487	인천33두5107	이인수	408-1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94번지 1호 45동 4번 303호	주소불명	11월과태료부과
193	035490	인천33로8808	강봉숙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90번지 22호 8동 1번 거평하이츠빌라 마동 4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94	035614	인천33모4600	유인봉	404-190	인천광역시 서구 삼곡동 251번지 1호 18동 1번 영성빌라 2동 802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95	035654	인천33모8857	(주)서민산업	404-310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60번지	이시불명	11월과태료부과
196	035395	인천34고7843	백인성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4번지 2호 35동 2번	주소불명	11월과태료부과
197	036015	인천34나2916	김철오	404-24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5번지 3호 17동 2번 보성빌라 3동 103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198	036857	인천34노2138	(주)원기공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번지 41호	수취인불명	11월과태료부과
199	036021	인천34노4556	김기남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78번지 31호 12동 5번 신우빌라지 나동 402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200	036661	인천34마9909	고광림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70번지 21호 28동 2번 별장빌라 202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201	036026	인천35가3568	(주)사관플랜드 T.564-7133	404-28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97번지 8호	주소불명	11월과태료부과
202	036029	인천35가6978	이재호	404-270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38번지 12동 4번 칸스타온 동성아파트 203동 2003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203	035549	인천35고3893	이춘무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49번지 41호 12동 1번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204	036038	인천35나6797	노상순	404-28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87번지 7동 5번 동아아파트 111동 1603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205	035423	인천35나9857	(주)도도디자인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번지205호	이시불명	11월과태료부과
206	035425	인천35다4839	이성숙 T.428-9645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2번지15호27/5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207	036666	인천35라8517	김숙자	404-24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1번지 22호 4동 2번	수취인불명	11월과태료부과
208	036040	인천35라1253	박진성	404-18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46번지 20호 43동 3번 은하마을 2동 401호	수취인불명	11월과태료부과
209	036054	인천35마9816	김진희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2번지 22호 27동 3번 302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210	036408	인천35마7048	송재기	404-28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39번지 3동 5번 영남타임스아파트 105동 1301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211	036671	인천35마6182	(주)동서중공업	404-30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번지 20호	이시불명	11월과태료부과
212	036411	인천4가6945	홍지혜	404-28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98동 2번 금호아울림아파트 903동 604호	수취인불명	11월과태료부과
213	036071	인천5라1509	윤영일 T.578-5632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31번지 1동3번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214	036075	인천60나2215	박호주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87번지 3동 5번 한국아파트 301동 309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215	036419	인천70다7389	강영일	404-190	인천광역시 서구 삼곡동 242번지 7호 7동 4번 제스트빌 903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216	035495	인천70마3070	김경삼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5번지 20호 1동 1번	주소불명	11월과태료부과
217	035379	인천72나5280	박방관	404-28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431번지 3호 4동 2번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218	036677	인천73고2569	박종원 T.567-0246	153-0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82번지 3호 우미언빌 a동 804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219	036422	인천73고2973	박대성	100-450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번지 227호 13동 4번 101호	이시불명	11월과태료부과
220	036679	인천73고3207	최승래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4번지 1호 35동 1번 화림빌라 가동 202호	폐문부재	11월과태료부과
221	036680	인천73고3851	이한신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3번지 43호 21동 2번	주소불명	11월과태료부과

222	036077	인천73고15045	박광열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3번지 186호 6동 1반 상호빌라 2동 102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223	036066	인천73노-8391	노화순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8번지 8호 25동 3반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224	036069	인천73도1663	김건우	404-270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2번지 2호 11동 4반 신명아파트 107동 1104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225	036321	인천7그3415	장학근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09번지 7호 35동 1반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226	036090	인천80L2063	구황서	404-26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동 1반 이시미래지향아파트 101동 802호	수직인불명	11월과대료부과
227	036099	인천81L13281	이기만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용인동 295번지 1호 37/3 유승아파트 102동 102호	수직인불명	11월과대료부과
228	036100	인천81L4418	김호연	448-120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동천동 424번지 1호 1동 1반	수직인불명	11월과대료부과
229	036105	인천81리4937	박옥희외1인(김귀성)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90번지 70호 3/6 한빛아파트빌 1동 401호	수직인불명	11월과대료부과
230	036107	인천81리6613	김호연	448-120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동천동 424번지 1호 1동 1반	수직인불명	11월과대료부과
231	036435	인천81리3159	이승복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31번지 14호 21동 5반 경인빌라 1동 401호	수직인불명	11월과대료부과
232	036697	인천81리6340	손성민	404-160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28번지 6호 5동 5반 304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233	036389	인천82L13481	이상근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78번지 6호 22동 1반 동서빌라 2동 B02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234	036437	인천82L13808	최국열	461-260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산성동 1197번지 10동	수직인불명	11월과대료부과
235	036110	인천82L17810	이상수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2번지 3호 18동 8반 보광아파트 101동 908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236	036554	인천82리2435	윤성원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5번지 20호 1동 1반	주소불명	11월과대료부과
237	036702	인천83L14063	이관진	403-030	인천광역시 부평구 종천동 390번지 5호 무지개아파트 1동 303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238	036705	인천83L18004	(주)우드뱅크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802번지 13호	수직인불명	11월과대료부과
239	036707	인천83L13004	전영기(공제면제)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7번지 22/3 kpp상설빌라지 1동 503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240	036126	인천83L16277	위찬요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46번지 24동 5반 한신그랜드힐빌라지 29동 500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241	036132	인천83리1515	신명일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72번지 2호 28동 4반	수직인불명	11월과대료부과
242	036745	인천남동자17174	구자숙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5번지 2호 27동 6반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243	036734	인천서자14174	위주환	404-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95번지 27호 25동 4반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244	036743	인천서자16477	가영자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7번지 22동 3반 상성빌라지아파트 2동 1호	주소불명	11월과대료부과
245	036719	인천서자17405	유재봉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2번지 11호 22동 4반 102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246	036727	인천서자18793	허태민	157-0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27번지 25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247	036729	인천서자18848	오금자	404-270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38번지 13동 4반 컨스타운 동성아파트 207동 1403호	폐문부재	11월과대료부과
248	036749	인천서자1007	김삼근	404-2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2번지 8호 27동 4반	주소불명	11월과대료부과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163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92(2006.06.05)호로 사업인정 고시된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건설공사 2공구”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재결서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에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 업 명 :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건설공사 2공구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3. 수용재결일 : 2008. 10. 23
4. 공고기간 : 2008. 12. 13 ~ 12. 27
5. 공시송달 대상자 : 불임
6.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032-560-4487)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032-560-448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대상자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사 업 명 :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건설공사 2공구

성 명	주 소	비 고
정윤근	경성부 운니정 79-2	
주대환	경성부 도렴동 93	
조복증	인천 서구 오류동 541	
김익배	경성부 봉래동 4정목	

인천광역시서구청공고 제 2008-1167 호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건축신고(건축) 처리된 아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가. 도로지정 근거**

-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도로대장 등)

나. 도로지정 내역

건축허가 위치	건 축 주	도로지정 현황		
		도로위치	도로지정 및 규모	비고
인천서구 오류동 22-1번지	조 고 현	오류동 22-1번지 진입로 부분 도로지정	도로너비:4.0m 도로길이:30m 도로면적: 123.0㎡	

다. 공고 방법 : 구보게재, 구홈페이지 게시, 관할 동사무소 게시

라. 도면 열람 : 서구청 검단출장소 건축팀(☎ 032-560-3232)에 비치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공고 제2008 - 21 호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

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일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

□ 시행일시 : 200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시행내용

○ 영유아 예방접종

예 방 접 종 명	접 종 시 기	접 종 시 간
비시지(BCG)	• 생후 4주 이내	▶ 영유아 예방접종 : 월~금 오전 9:00~11:30 ▶ BCG 예방접종 : 수요일 오전 9:00~11:30 ▶ 학생 예방접종 : 월~금 오전 09:00~17:00
B형간염	• 1차 : 출생 시 • 2차 : 생후1개월 • 3차 : 생후 6개월	
디피티, 소아마비 (DTaP/Polio)	• 2. 4. 6개월(기초 3회) • 18개월: 추가(4차)	
티디 (Td)	• 만 4~6세: 추가(5차) • Td 만 11세(초등6년): 추가(6차)	
홍역·볼거리·풍진 (MMR)	• 12~15개월(기초) • 만 4~6세: 추가(2차)	
일본뇌염 (사백신)	• 1차: 생후12개월~24개월 • 2차: 1차 접종 후 1주일 • 3차: 2차 접종 후 1년 • 4차: 만6세(초등1년) • 5차: 만12세(중등1년)	
수두	• 12개월~15개월	
※ 일본뇌염 생백신 및 디피티 수입백신의 경우 국내백신과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으니 방문 전 백신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 추가접종 및 성인예방접종

예 방 접 종 명	대 상 자	시 기
장티푸스	-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 급수시설 종사자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조리종사자 -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연 중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출혈열)	-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농부, 공사장 인부 등) -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낙시꾼)	연 중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	- 서구관내 거주자로 60세 이상 - 보건소등록 만성질환자 (폐·심장질환, 당뇨, 만성신부전, 암, 간 질환자) - 사회복지시설수용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1급 ~ 3급, 국가유공자	10월~12월
B형간염	▶ 접 종 - 기초(3회): 항원항체 검사결과 모두 음성인 성인 - 재접종: 3회 기초접종 후에도 음성인 고위험군 -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 받아야 되는 환자 -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 수용시설의 수용자 및 근무자 - 성매개질환의 노출 위험이 큰 집단 - 추가접종: 혈액투석환자 (매년 항체검사 시행 후 항체가가 10mIU/mL미만일 경우) ▶ 검 사 - 건강한 소아 및 성인은 예방접종 후 항체검사를 권장하지 않으며 항체검사 상 음성이라도 재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 검사대상: 고위험군(3회 접종 후 3개월 후)	연 중
접종시간	월~금 오전 09:00~17:00	

□ 접종대상자: 관내주민

□ 접종장소: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예방접종실(☎560-5041~4)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보건지소 예방접종실(☎560-3416)

□ 준비물: 주민등록증, 모자보건수첩(예방접종기록수첩)

범우연립재건축조합고시 제2008-01호

범우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2006년 03월 29일 범우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2006년 03월 31일 조합법인등기(인천지방법원), 2006년 05월 25일 사업시행인가, 2006년 06월 13일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2008년 11월 03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08년 11월 26일 준공인가된 인천 범우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 서류의 사본은 시행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9일

범우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 사업개요

- 가. 재건축사업명칭 : 범우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구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7-25번지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0-5번지
 (☎032-578-1597)범우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두욱)
 라. 준공인가일 : 2008년 11월 26일

2. 이전고시 내용

- 가. 대지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공동주택	2999.6	공동주택 91세대의 총 대지면적(지분 총계)
계	2999.6	

나. 기부채납부지

- 기존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7-25번지(3,004.1㎡)에서 527-36번지(4.5㎡)가 이기되고 기부채납 하여 527-25번지는 2,999.6㎡로 정리.

○ 기부채납 전

번 지	종전 면적	비 고
석남동 527-25번지	3,004.1㎡	최초 부지 면적

○ 기부채납 정리 후

번 지	종후 면적	비 고
석남동 527-25번지	2,999.6㎡	기부채납 후 등기 면적
석남동 527-36번지	4.5㎡	석남동 527-25번지에서 이기 후 기부채납

다. 건축시설의 종류별 규모별 내역(㎡)

종류별내역 : 공동주택 지하2층~지상23층, 1개동, 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구 분	형별	세대수	전용면적	계약면적	형별연면적	비 고
공동 주택	24	45	59.9928	114.5408	5,154.336	
	32	31	84.9912	155.0690	4,807.139	
	38	15	99.9974	184.0456	2,760.684	
계		91			12,722.159	

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 권리자 수

분양 대상	형별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	총 세대수	비고
공동 주택	24	23	22	45	
	32	20	11	31	
	38	4	11	15	
계		47	44	91	관리처분 상의 조합원수 대비 1명 감소

끝.